



# 저작권 등록 신청 지침서



## 01

### 저작권 등록제도 알아보기

# Contents

- 가\_저작권 등록 개관 ..... 06
- 나\_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07
- 다\_누가 신청하면 되나요?(등록 신청인) ..... 08
  - 1) 권리등록 : 저작자 등 단독신청 ..... 08
  - 2) 권리변동등록 : 공동신청 ..... 09
- 라\_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등록의 효과) ..... 10
  - 1) 추정력 ..... 10
  - 2) 대항력 ..... 12
  - 3)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 12
  - 4) 보호기간 연장 효과 ..... 13
  - 5)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 14
- 마\_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등록의 대상) ..... 16
- 바\_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등록의 절차) ..... 16
  - 1) 등록 신청 ..... 17
  - 2)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18
  - 3) 반려 사유 및 이의신청 ..... 18
- 사\_등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등록의 종류) ..... 20
  - 1) 권리등록 ..... 20
  - 2) 권리 변동 등록 ..... 24
  - 3) 등록 사항 변경 등 ..... 26



02

## 저작권 등록하기 : 등록종류별 서식 작성예와 저작물성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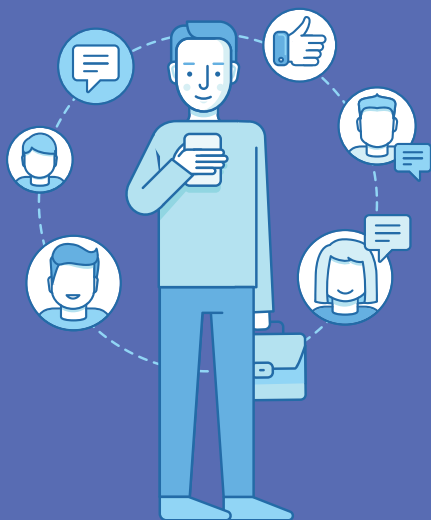
<b>가_권리등록</b> .....	<b>30</b>
1) 어문저작물 .....	30
2) 음악저작물 .....	38
3) 연극저작물 .....	44
4) 미술저작물 .....	52
5) 건축저작물 .....	64
6) 사진저작물 .....	72
7) 영상저작물 .....	79
8) 도형저작물 .....	8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93
10) 2차적저작물 .....	98
11) 편집저작물 .....	106
12) 저작인접권 .....	113
1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120
<b>나_권리변동등록</b> .....	<b>123</b>
1) 일반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등 .....	124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 등 .....	126
3) 저작인접권 양도 등 .....	129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양도 등 .....	133



CHAPTER 01

# 저작권 등록제도 알아보기

- 가\_저작권 등록 개관
- 나\_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다\_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라\_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마\_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 바\_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 사\_등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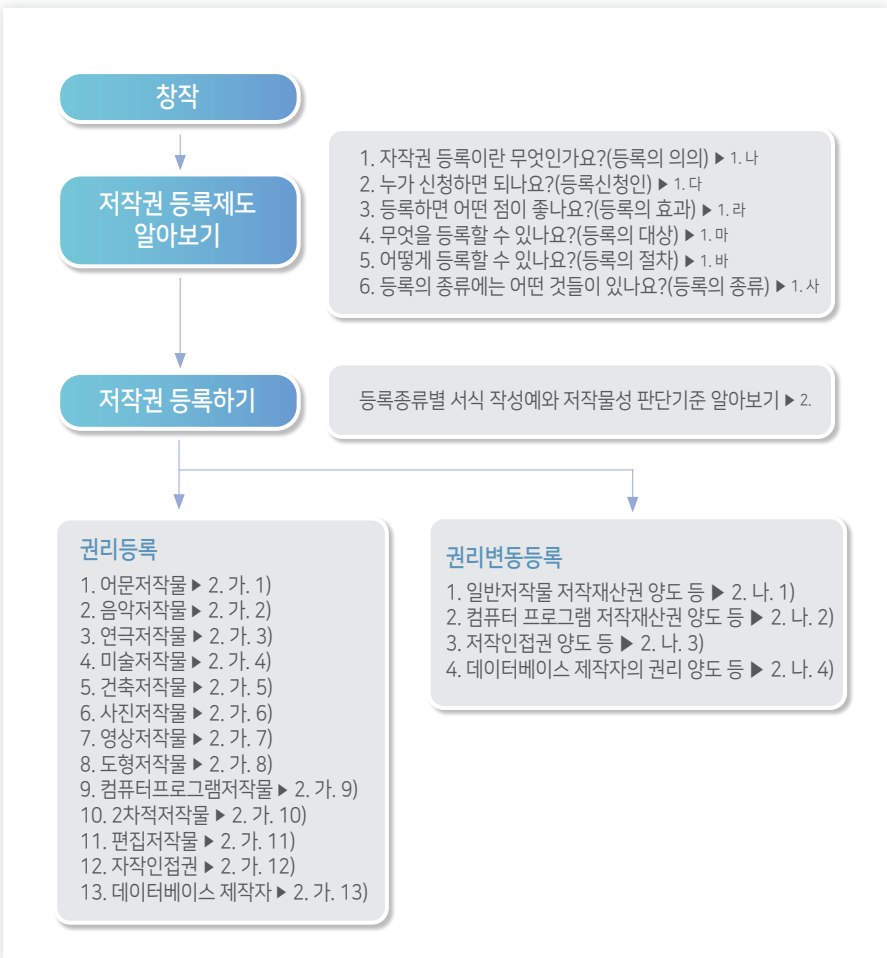
# 가

## 저작권 등록 개관



- ①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 ② 저작권 등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 ③ 저작권을 직접 등록해보기

해당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나

## 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①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 ②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TIP]

①을 권리등록 ②를 권리변동등록으로 구분한다. [등록의 종류는 1-사 참조]

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① 제 호(제 호)	영수	② 종 류	영수지적물7종영수권7종7개조	C-2019-034578	
③ 형태 및 수량	디지털파일 1	④ 창작연월일	2019.03.01		
⑤ 원 저작물	제목	⑥ 창작연월일	2019.03.01		
⑥ 2차 저작물인 경우 영인 기호	저작자				
⑦ 성 명 (법 인 명)	[한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자]				
⑧ 국 적	대한민국	⑨ 주민등록번호	[한인등록번호]	110271-0003446	
⑩ 주 소	경기도				
⑪ 전자우편주소	****@*****	⑫ 전화 번호			
⑬ 시 장 연 도					
⑭ 연 령 월 일	2019.04.01	⑮ 국 가	대한민국		
⑯ 저작물 공표후 30일 내에 공표된 국가					
⑰ 저작물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⑱ 공표매체명	유튜브: EBS총괄01기				
⑳ 관련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번	등록사항				비연
1	접수번호: 2019-036457-1	접수일자: 2019.11.21	등록일자: 2019.11.21		
	등록부분: 저작권 등록(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전자등록공표연월일)				
	신청인: 한국교육방송공사(110271-0003446)				
	등록권리인: 경기도				
	등록원인: 저작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창작: 2019.03.01, 공표: 2019.04.01				

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① 제 호(제 호)	영수	② 종 류	영수지적물7종영수권7종7개조	C-2019-034578	
③ 형태 및 수량	디지털파일 1	④ 창작연월일	2019.03.01		
⑤ 원 저작물	제목	⑥ 창작연월일	2019.03.01		
⑥ 2차 저작물인 경우 영인 기호	저작자				
⑦ 성 명 (법 인 명)	[한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자]				
⑧ 국 적	대한민국	⑨ 주민등록번호	[한인등록번호]	110271-0003446	
⑩ 주 소	경기도				
⑪ 전자우편주소	****@*****	⑫ 전화 번호			
⑬ 시 장 연 도					
⑭ 연 령 월 일	2019.04.01	⑮ 국 가	대한민국		
⑯ 저작물 공표후 30일 내에 공표된 국가					
⑰ 저작물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⑱ 공표매체명	유튜브: EBS총괄01기				
⑳ 관련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등록의 내용					
순번	등록사항				비연
1	접수번호: 2019-036457-1	접수일자: 2019.11.21	등록일자: 2019.11.21		
	등록부분: 저작권 등록(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전자등록공표연월일)				
	신청인: 한국교육방송공사(110271-0003446)				
	등록권리인: 경기도				
	등록원인: 저작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창작: 2019.03.01, 공표: 2019.04.01				

표 저작권등록부

# 다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등록 신청인)



- ① 권리등록은 저작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저작권 양도 등 권리 변동 등록은 권리자·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권리등록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저작자 등 단독 신청** 저작자 등(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이 단독으로 신청  
 - 저작자 사망시 상속인이 신청 가능  
 - 나이, 국적 불문. 미성년자도 등록 가능(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CF. 공동 저작자·실연자·제작자인 경우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 신청

### [TIP] 외국인의 저작물 등록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인 경우 외국인도 등록 가능하다.

### [TIP] 업무상저작물의 등록

일반적으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나 예외적으로 창작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이 저작자가 되기도 한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업무상저작물은 종업원인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권리등록 역시 '법인 등 사용자'가 해야 한다.

cf.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 영상제작자는 권리변동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모기와의 전쟁’ 뉴스보도 영상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이 사건 뉴스는...원고 문화방송과 사원들 사이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뉴스는 원고 문화방송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TIP] 학술단체, 동창회, 문화예술단체 등을 권리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단체, 동창회,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권리변동등록 : 공동신청** : 등록으로 효력을 얻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에 협조하여야 하는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분	매매	증여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록 권리자	양수인	수증자	채권자	채권자
등록 의무자	양도인	증여자 (유증시 유언 집행자)	채무자	채무자

질권이전	질권변경	질권소멸	출판권·배타적 발행권
양수인	변경 사항으로 이익이 되는 자	채무자	출판권자·배타적 발행권자
질권부 채권의 양도인	변경 사항으로 불이익이 되는 자	채권자	설정자

**예외적 단독 신청**

등록의무자의 ‘단독신청승낙서’ 첨부시, 등록권리자(예: 양수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처분제한등록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법원이 위원회에 촉탁에 의한 등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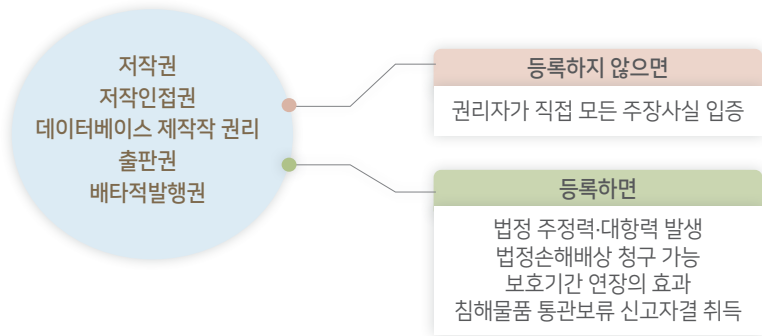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 라

##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등록의 효과)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추정력·대항력 등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창작자의 권리가 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등록의 효과

### 추정력 '누가 언제 만들었나' 추정

추정력 :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자 추정'과 '저작시기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반대의 사실을 입증(반증)하지 못하는 한,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예) 저작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발생했을 때, 창작 시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예를 들어 김창작이 창작자와 나눔이의 이야기를 2021.8.5에 창작하고 이를 등록하였다면, 법원 소송 등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 상대방이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김창작이 2021.8.5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자 추정' :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무명 저작물인 경우 실명 등록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저작 시기 추정' :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 손해배상 청구 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③...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Q&A 10년 전에 창작한 걸로 등록해도 창작일이 추정되나요?**

‘저작시기의 추정’은 창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 되어야만 가능하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1년의 기산점은 등록일자이며 접수일자 기준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Q&A 누가 내 저작물을 자기 이름으로 먼저 등록했어요.**

등록이 되면, 일단 등록부에 기재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된다. 이른바 ‘법률상의 사실추정’이라는 것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증(反證)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는 않아도 된다.

또한 이처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등록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허위등록으로 형사 처벌이 가해진다.

## 대항력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유효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권리가 변동된 것'을 등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소위 '대항력(對抗力)'이라는 법적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양도(또는 처분제한 등) 사실을 등록하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예: 이중 매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 서로 저작권을 먼저 양도받았다고 주장할 때 - 예컨대 저작권자 A가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한 뒤에 다시 C에게도 양도한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B가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등록을 C가 먼저 했다면 C가 B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 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물당 1천만원이하(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 저작권을 침해당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때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등록을 해뒀다면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보호기간 연장 효과

**실명 등록** : 무명(無名: 이름이 없거나 이름을 알 수 없음)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 본명 이외에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명·아호·약칭 등을 총칭)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데, 이를 실명으로 등록하면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바뀌게 된다(법 제40조) [‘공표~사망시’만큼 보호기간 연장 효과]. 이미 실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의 실명 등록 시에는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효과가 없다.

예) 책에 무명으로 공표했다가, 실명으로 등록 시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공표일자' 등록 : 보호기간이 '창작한 때로부터 70년'에서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창작시~공표시’만큼 보호기간 연장 효과].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목개정 2011. 6. 30.]

##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하면 관세청 고시 제2019-1호(2019. 1. 14., 일부개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로써 캐릭터나 도안이 삽입된 의류, 봉제인형 등 불법복제품,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등 국내유입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 ※ 지식재산권 관세청 신고제도 안내

온라인 신청

1. <https://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지식재산권 → 저작권신고

2.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홈페이지 <http://www.e-tipa.org> 접속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메인화면 상단 위치)를 클릭

우편·방문 및 문의처 : TIPA 지식재산권신고센터 02-544-5203~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5층)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시 구비서류

가.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 마.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 바. 저작물 사진 등(전산화일 포함)
- 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Q&A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가 없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등기나 등록 등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10조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베른협약 가입국들은 모두 무방식주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등기나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

**제10조(저작권)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성립하는 것(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하지만 등록을 통해 추정력, 대항력 등 법적인 '힘'을 부여받음으로써, 권리자로서 저작권을 행사에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리 등록해 준 저작권등록증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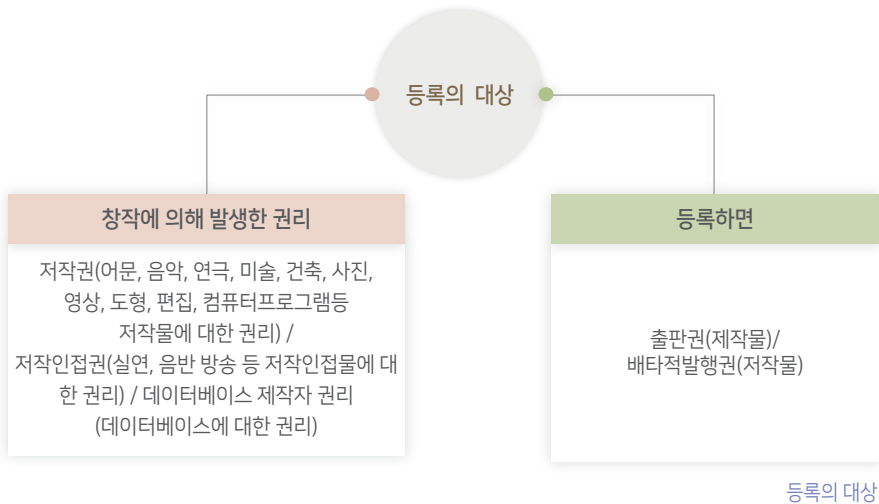
## 마

###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등록의 대상)



- ①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 ② 권리등록, 권리변동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 등록의 경우 권리등록이나 권리변동등록 모두 저작물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서술한다.



## 바

###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등록의 절차)



신청서·명세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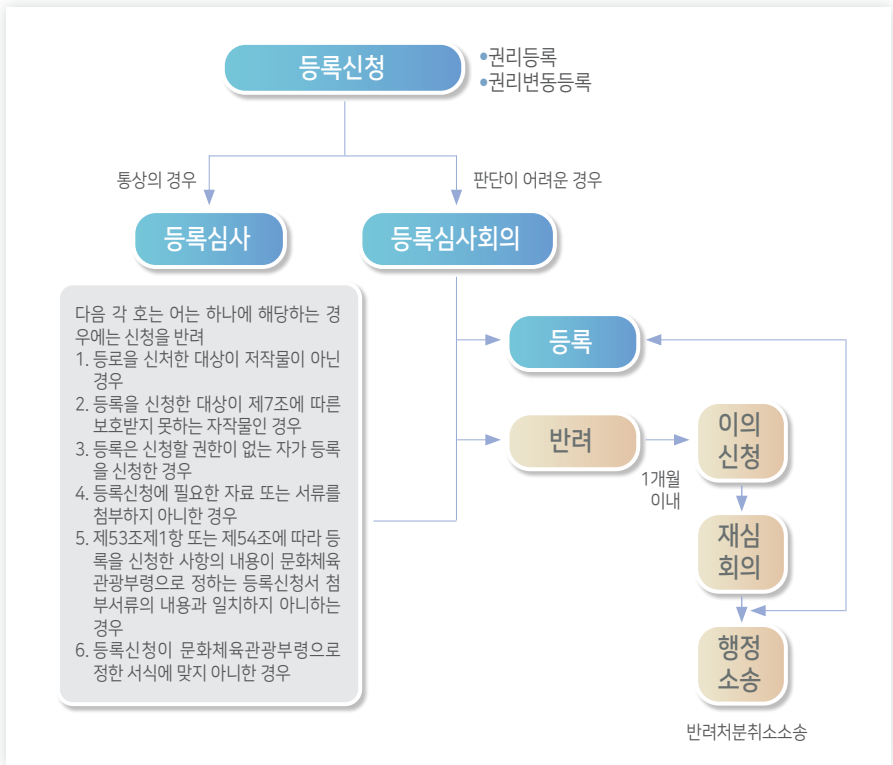
하자·반려 사유가 없다면, 4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이 교부된다.

반려되는 경우, 1월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주의의 원칙

저작권 등록은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된다(권리변동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공동 신청).

\* 예외적으로 법원 등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 등록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신청서·명세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록 대상, 적합한 신청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제1장 라, 마 참조), 등록의 종류에 맞는 신청서·명세서를 작성,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제2장 참조)

[TIP]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

구분

상세사항

온라인 등록시스템 [www.cros.or.kr](http://www.cros.or.kr)

- 온라인  
(사용자  
인증 필수)



우편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하위 5층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

방문



지하철 서울역 1호선, 4호선 11번 출구 -> 게이트웨이하위 도보이동 또는 출구 지하 아케이드를 통해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위원회 심사 -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부에 기재(업무일 기준 4일 이내).

등록 완료시 신청인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증은 방문수령, 등기우편수령, 온라인 발급 중 선택 가능

### [TIP] 등록증을 다른 주소에서 우편으로 발급 받으려면?

등록되는 주소와 등록증 수령 주소가 다를 경우 등록증 수령 주소는 별도로 확인하여 기록한다.

등록증 재교부

공동저작자 등 등록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해당 권리자의 수만큼 재교부 가능

분실·멸실·훼손시 재교부 가능

[Q&A] 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작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등록증은 그 자체 권리문서가 아니며, 단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행정기관의 통지의 의미이므로 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등록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반려 사유 및 이의신청

심사에서 등록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반려될 수 있다(법 제55조 제2항).

반려 통지문이 발급되고,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함께 반환한다.

### <반려 사유(법 제55조 제2항)> [제4장 참조]

- ①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저작물성 판단기준은 제2장 나 참조]
- ②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 ③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 ④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

- 이하의 경우
- ⑥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④⑤⑥의 경우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면 절차 재개·등록 가능하다.

**[TIP]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복제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서류를 보완하여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보완 방법은 등록담당자에게 문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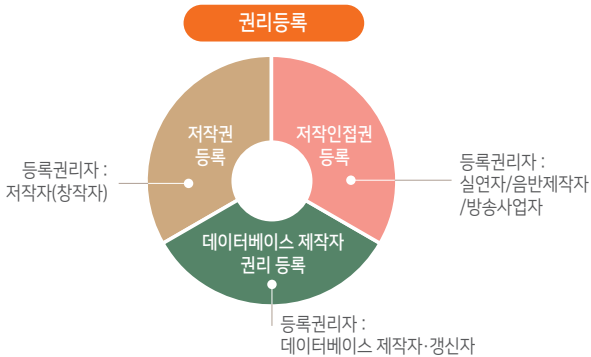
**등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

- 권리등록
  - ① 저작권 ② 저작권접권 ③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권리변동등록 :
  - ①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록
  - ②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 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

**권리등록**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권리등록은 '등록물'에 따라 ① 저작권 등록 ② 저작권접권 등록 ③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등록으로 구분된다.



등록사항	등록권리자		
<p style="text-align: center;"><b>저작권 등록</b></p> <p>① 저작자의 성명, 이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p> <p>②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p> <p>③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p> <p>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p> <p>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p> <p>⑥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p>	<p>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 권리등록의 종류 : 저작물 종류에 따라 11가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92 467 754 493">저작물</th> <th data-bbox="841 467 930 493">종류(예시)</th> </tr> </thead> </table>	저작물	종류(예시)
	저작물	종류(예시)	
	<p><b>어문 저작물</b></p> <p>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p>		
	<p><b>음악 저작물</b></p> <p>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p>		
	<p><b>연극 저작물</b></p> <p>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p>		
	<p><b>미술 저작물</b></p> <p>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리커처, 각종 도안 등</p>		
	<p><b>건축 저작물</b></p> <p>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p>		
<p><b>사진 저작물</b></p> <p>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p>			
<p><b>영상 저작물</b></p> <p>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p>			
<p><b>도형 저작물</b></p> <p>(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p>			

등록사항

등록권리자

저작권  
등록

저작물	종류(예시)
편집 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응용S/W(사무관리, 과학기술, 교육, 오락, 기업관리, 콘텐츠 개발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S/W, 산업용 S/W, 등), 시스템 S/W(제어프로그램, 언어처리, 유틸리티,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보안S/W, 미들웨어 등)

저작권  
인접권  
등록

- ①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
- ②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제호, 종류, 실연, 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연월일
- ③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인접권자

- ①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 음반제작자 :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다.
- ③ 방송사업자 :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한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방송이라 하며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사항	등록권리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국적, 주소 또는 거소 ② 데이터베이스의 제호, 종류, 제작완료일 또는 갱신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④ 데이터베이스가 공표된 경우에는 그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⑤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b>데이터베이스제작자</b>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소재의 저작물성을 묻지 않음)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저작권법 제2조**

-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 19.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 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TIP - 1저작물 1등록 원칙**

저작권(저작권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포함)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저작물을 하나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1편의 시, 1편의 소설, 1컷의 사진처럼 각각의 저작물마다 각각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 1 수수료 금액에서도 이러한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도록 한 데에서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1항에서도 등록업무담당자는 등록신청의 종류에 따라 건별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하여 1저작물 1등록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 1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비고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 제11조(등록신청의 접수)

① 등록업무담당자는 등록신청의 종류에 따라 건별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권리 변동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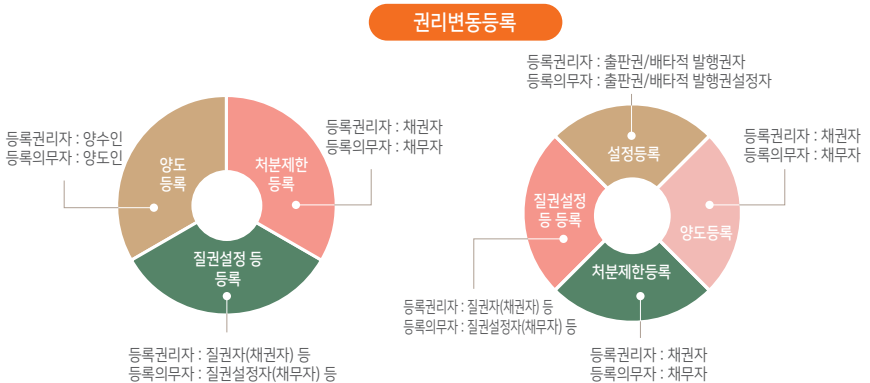
권리변동의 등록이란,

- ①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에 대해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

### 저작권법 제2조

-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②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권리변동 사실을 등록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  
[등록의 효력 참조]



### 양도 등록

저작권재산권 등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의 등록(예: 계약, 증여).

- 전부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도 가능(예: '복제권만 양도', '지분 20% 양도').

### [TIP]

양도 등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최종의 양도사항만을 등록할 수도 있다.

저작권 등록 없이 변동 등록만도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정보를 충실하게 하고, 양수인이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분제한 등록

채무자의 저작권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등록

- 당사자간의 특약
- 법원의 명령, 세금 체납 관련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 등에 의한 경우

###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등록

저작권재산권(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포함)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한 질권을 등록

### 질권(質權) : 저작권재산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중 하나(민법 제329조~제355조 참조).

변제가 없는 때에는 해당 저작권재산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 출판권·배타적 발행권 등록

출판권·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및 양도, 처분제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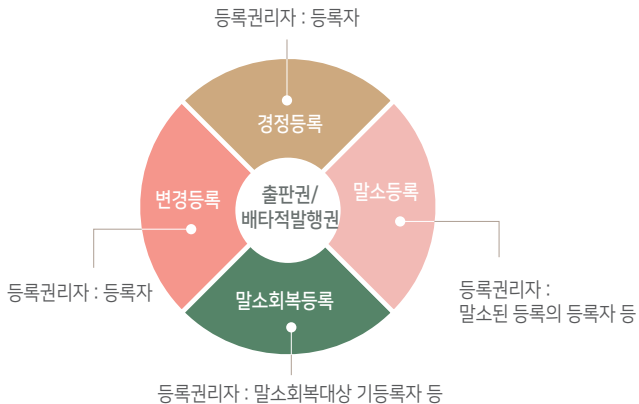
**배타적발행권** :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다른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 :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이를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전자출판 제외)'하고자 하는 자(출판권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등록 사항 변경 등

이미 등록된 사실에 관한 등록 : ① 등록사항 변경·경정, ② 말소 또는 말소 회복 등록

### 등록사항 변동등록



## 변경 등록·경정 등록

### 변경등록

등록된 사항(저작자의 성명·이명, 주소, 제호 등)이 '등록 이후' 변경되어 등록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개명, 법인 상호 변경)

회사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회사가 소멸하고 저작재산권이 새로운 회사에 일반승계된 경우 실무상 권리변동 등록을 신청한다.

Cf. 전화번호, 메일주소는 수수료 없는 개인정보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경정등록

신청인 또는 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처음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공표 관련 사항 중 일부(예: 공표매체정보,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 등)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등록이 가능하다. 착오로 창작일이나 공표일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경우에도 경정등록이 가능하다.

### [TIP] 경정등록이 불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 (1) 공동저작물의 경우 신청인의 착오에 의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에 누락이 있는 경우, 허위등록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잘못 등록된 기존 등록을 말소한 후 다시 새로 등록한다.
- (2) 신청당시 공표연월일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당시 공표가 누락된 경우나 등록 이후 공표를 한 경우를 불문하고 경정등록 절차를 통해 추가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등록은 말소하지 않은 채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하며, 절차는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아닌 일반등록신청과 동일하다.

## 말소등록·말소회복 등록

### • 말소등록

등록을 완료한 후에 ① 등록의 실체가 소멸되는 경우 또는 ②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당해 등록을 법률적으로 소멸하고자 하는 등록

### • 말소회복등록

불법 또는 착오로 기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록

### • 직권말소등록

위원회가 직권말소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제55조의4).

\* 직권말소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로, 당사자 등의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등은 직권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 개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증거 조사 등은 청문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능하다(행정절차법제 33조).

CHAPTER 02

# 저작권 등록하기: 등록종류별서식 작성예와 저작물성 판단기준

가\_권리등록  
나\_권리변동등록





##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은 저작권법에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예시되고 있다. 암호나 점자(點字), 속기기호, 전신기호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도 그 기호들이 일반적인 언어와 치환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예컨대 소설, 시와 같은 문학작품 외에도 편지, 일기, 대학입학시험문제, 국한(國漢)옥편 등이 어문저작물이다.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탁상연설(table speech) 등 구술에 의한 경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기능적인 상품 카탈로그나 홍보 팸플릿, 지침서 내지는 용법 등의 설명서 등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

### [TIP]

글에 수반되는 설명 자료로서 일부 삽입된 '도표, 그래프' 등은 어문저작물의 일부로 포함 가능하다.

어문적 내용이 미미하고 이미지나 사진이 주를 이루는 경우, '어문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은 부정되기 쉽다(예: 사용설명서).

### [TIP] '편집저작물'로서의 등록 가능성[2.가.11) 편집저작물 참조]

신문, 시험문제 전체, 사업제안서·기획서 전체가 '편집물 중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다. 편집저작물은 어문저작물과 달리 편집물 중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하고, 저작권 보호 범위 역시 이에 국한된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창작이와 나눔이 이야기(The Story of Changjagi and Nanum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어문저작물>소설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신청인 ^ 등록권리자 v	③ 성 명 (법인명)	(한자)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 적	대한민국	⑤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트워) 5층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 상속인 [ ] 양도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000000-0000000 000-00-00000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트오한 경우에는「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구증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인터넷: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2.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소설, 시, 각본 등 대부분의 문학 작품</p>	
<p>창작성이 표현된 강의안이나 학술서적, 시험문제  <b>방송통신대 교재 사건_34Page</b>                      서울중앙지법 2009. 5. 14. 선고 2007가합14280 판결  <b>고등학교 교내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인정_34Page</b>                      서울중앙지법원 제61민사부 2005가합 73377 판결</p>	<p>“단순한 정보, 사실(Fact)”만 적어 놓은 정보지·설명서·규칙서  <b>여행천하유렵 사건_36Page</b>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b>연합뉴스 사건_37Page</b>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p>
<p>독창적으로 표현한 사업계획서·기획안  <b>슈퍼 바이블 엑스포 행사 기획서 사건_35Page</b>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4.7. 선고 2010가합4394 판결</p>	<p>“누가 하더라도 표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약관이나 표준 교안.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어놓은 요리 레시피                      단순하고 정형적인 방식으로 서술된 사업계획서·기획서</p>
<p>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SNS의 글이나 편지  <b>이취소 편지 사건_35Page</b>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 9230 판결  <b>이외수 트윗글 사건_36Page</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822 판결</p>	<p>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대화와 같이 “관행적”인 표현  <b>왕의 남자 사건_37Page</b>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판결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                      제호, 짧은 구호나 간단한 문구  <b>도복이 사건_37Page</b>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p>
<p>칼럼, 기획 기사</p>	<p>신문의 부고 등</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나 소설 등 문학적인 작품들은 대부분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는 있으나, 문학작품이 저작물성이 없어 등록이 반려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의안이나 학술서적, 의학정보서, 설명서나 표준 교안 등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적·사실적 문서의 경우 비록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만의 경험이 반영되는 등 표현에 있어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났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 ▶ 방송통신대 교재 사건(저작물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2009. 5. 14. 선고 2007가합14280 판결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술하는 방식 및 구체적인 표현은 저자의 창작적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도표 등의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관련 과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술한 이 사건 각 교재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 ▶ 고등학교 교내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인정

서울중앙지법원 제61민사부 2005가합73377 판결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서, 기획안 등의 경우에도 기재된 문장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개성이 나타나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문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계획서·기획안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를 표현한 단어의 조합(combination of words) 부분에 창작성이 있어야 등록 가능하다.

▶ 슈퍼 바이블 엑스포 행사 기획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4.7. 선고 2010가합4394 판결

엑스포라는 행사를 위해서는 통상 기획서 작성이 필수적이고 그 기획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행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위 기획서는 저작권자가 상당기간 동안 성경의 내용에 바탕을 둔 구조물과 체험관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으로 작성된 점, 위 기획서에는 슈퍼 바이블 엑스포라는 성격을 테마로 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기획배경, 행사목표, 행사개요, 기대효과, 설치물 개요, 운영계획, 홍보 마케팅 계획, 재무계획 등의 계획이 나름대로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획서는 그 표현에 저작권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 저작물로서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된다.

편지, SNS, 일상 대화 등 생활 속의 글들도,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 이휘소 편지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 ▶ 이외수 트윗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단순한 정보, 사실(Fact)만 적어 놓았다면 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문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다.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 시각표, 요금표 같은 것들도 사상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

신문기사 중에도 신문의 부고란은 대표적인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이다.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만을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 여행천하유립 사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사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350 판결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에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짧은 문구나 슬로건 등도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왕의 남자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14. 선고 2006라503 판결

희곡 ‘키스’의 제1부에서 주인공 남녀가 서로 떨어져 서 있는 가운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영화 ‘왕의 남자’에서 표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일반적으로 제호나 광고 문구 등은 짧고 단순한 표현이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복이 사건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원고의 만화 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된 위법이 없다.

##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은 음(音, sound)을 수단으로 하여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 [TIP] - 가사(歌詞)는 어문저작물일까, 음악저작물일까

가사는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실무적으로는 ① 작사자와 작곡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나의 음악저작물로, ② 작사자와 작곡자가 다른 경우 작사는 어문, 작곡은 음악저작물로 등록을 받고 있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목 (제목)	창작가와 나눔이의 노래(The Song of ChangJagi and Nanum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등록: 총 1건 )		
	② 종류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사·작곡		
신청인 ^ 등록권리자 v	③ 성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층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	⑫ 주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기로 한 경우에는「저작권법」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인터넷: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명세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호 (제 목)	창작이와 나눔이의 노래 (The Song of ChangJagi and Nanumi)	② 종류  음악저작물 > 대중가요 > 작사·작곡		
	③ 복제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량 1		
기타 사항 ※	⑤ 4/4박자, 보통 빠르기로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의 의미,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사를 받은 경쾌한 음악으로 풀어낸 곡 ※ 충분한 실증이 되도록 저체히 기체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대용 작성 시 참고) 작곡에 대하여 작곡 상의 특징(예: 장르, 박자, 조성, 곡의 전개, 빠르기, 분위기 등)기체하고, 작사에 대하여 가사의 주제와 내용 기체. 상기 제시된 예시의 모든 작사·작곡 특징을 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복제물제출 시 참고) 복제물은 악보 또는 PC에 복제 가능한 음원(mp3 등) 파일 제출				
⑥ 건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체			
등록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체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체		
	창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⑬ 공표매체정보	유튜브(http://youtube.com/kcc)에 게시
		⑭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⑮ 성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한자)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우선순위에 V표를 하고 기체하지 않음 ⑯ 신청인과 같음	⑯ 국적	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소				
	⑱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체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⑳ 사망연도	㉑ 전자우편주소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체					

210mm×297mm(일괄용지 60g/m(재활용품))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에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체)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번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체
- 3) 저작자가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체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오페라, 아리아, 가곡, 가요, 교향곡, 연주곡 등 일정 길이 이상의 음악 대부분(일부에 저작물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 등록 가능)

### 썸데이 사건\_42Page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CM송, 징글(jingle), 시그널 음악과 같이 짧더라도 개성이 표현된 음악

CM송, 징글, 시그널 음악과 같이 짧으면서 관행적이고 흔히 사용되는 멜로디만으로 된 경우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 소위 머니코드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관용구(Cliche) 만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이 어렵다.

후렴구, 코러스에도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면 등록 가능

### 사랑해요 LG송 사건\_43Page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103783 판결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  
단순히 특정 소리를 무작위로 녹음한 것에 불과한 경우(예를 들어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비오는 소리, 자동차나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음악은 멜로디(가락), 리듬, 화음 등이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멜로디에 개성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리듬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정도의 보호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음은 높낮이의 차이를 가진 두 개 이상의 개별음이 동시에 또는 짧은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울림으로써 곡에 깊이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리듬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미미하다. 반면 멜로디(가락)는 개별 음의 고저나 장단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악곡의 창작성은 멜로디 부분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즉 음악 작품의 창작성 판단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의 표현은 멜로디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 ▶ 썸데이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멜로디(가락), 리듬, 화음 등 3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운지법이라든가 각종 악상기호(부드럽게, 힘있게, 아름답게 등), 이음줄, 프레이징(phrasing), 템포 등에 의하여 음악저작물의 전체적 느낌은 크게 변화한다. 이들도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페라, 아리아, 가곡, 가요, 교향곡, 연주곡 등 일정 길이 이상의 곡들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곡의 일부가 저작물성이 부정되더라도

도, 전체로 보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코러스, 후렴구에도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 ▶ 사랑해요 LG송 사건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103783 판결

이 사건 노래 부분은 비록 그 중 일부가 그 이전에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일부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은 인정된다.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위 '선택의 폭'을 고려해야 한다. 음악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의 경우보다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 소위 머니코드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관용구(Cliche) 만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이 어렵다.

CM송(징글(jingle) 또는 싱잉 커머셜(singing commercial))이나 시그널 음악의 경우, 짧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리의 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창작성이 발현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다.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음악저작물은 그 이용 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20768 판결).

화음, 멜로디, 리듬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1)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것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 또는 2) 누가 들어 보더라도 특별히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및 3) 단순히 특정 소리를 무작위로 녹음한 것에 불과한 경우(예: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비오는 소리,

자동차나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저작물성이 없다.

구전 가요를 비용을 들여 '채보'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다면, 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것이라면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려 사유가 된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 3)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이란 '사람의 언어 또는 동작으로서 예술적 사상과 감정을 관객에게 표현'한 것을 말한다. 몸짓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구분된다. 연극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 유형물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즉 즉흥적인 안무도 연극저작물이 된다. 다만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복제물을 제출해야 하므로 고정이 필요하게 된다. 연극 등이 행해지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 꼭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극저작물의 예시로는 연극, 무용,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즉흥극, 안무 등이 있다.

뮤지컬은 대법원이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다만, 실무상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결합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각본, 악곡, 가사 등은 각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로 등록이 되고, 뮤지컬의 안무만 연극저작물의 한 종류로 등록이 된다.

#### [TIP] 종합예술로서의 '연극'과 연극저작물

'연극'의 개념과 저작권법상의 '연극저작물'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나의 '연극' 작품을 위해서는 연극저작물 외에도 각본은 어문저작물, 연기는 실연으로서 저작인접권 등록이 가능하며, 무대장치는 미술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창작가와 나뉘이의 사랑이야기 (The Love Story of ChangJagi and Nanum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등록: 총     건 )		
	② 종 류	연극저작물>무용		
신청인 / 등록권리자 V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 적	대한민국	⑤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삼로 107(케이트웨이타워) 5층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i@copyright.tor.kr
	⑨ 신청인 구분	[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 (목록 별첨) [ ] 상속인 [ ] 공동상속인 중 1인 (목록 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거기로 한 경우에는「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기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인 터 넷: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약속)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호 (제목)	창작자와 나눔이의 사랑이야기 (The Love Story of ChangJagi and Nanumi) * 외국어는 한글 표기		② 종류	연극저작물>무용	
	③ 복제물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량	1
저작 내 용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안무이다. 처음에는 반대만 하던 양가 집안 어른들이 둘의 진실 어린 사랑을 보고 감명받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음으로써 둘이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려냈다. 팝핀과 발레를 플라보한 클래식한 안무이다. * 흥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만 부록 시 별지 기재 첨부 (내용 작성 시 참고) 연극저작물은 연극·동작의 형(형태)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안무를 말하며, 내용은 무용(안무)의 주제 및 신체적 동작과 움직임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하여 표현한 안무의 특징을 설명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 · 배포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한울스극장에서 공연(관객 5명)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⑯ 성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한자)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있음 ☑ 신청인과 같음	⑰ 국적			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㉑ 전자우편주소	
	㉒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x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도 권리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번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적 요소’가 있는 연극, 뮤지컬, 무연극, 발레 등</li> </ul> <p><b>난타 사건</b> <a href="#">_48Page</a>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104699 판결: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동작의 반복, 개별 요소 발레의 기본 동작들 등 기본적인 스텝(예컨대 발레에 있어서의 플리에 혹은 피로에테, 사교댄스에 있어서의 PV스텝 등) 쉬운 정형 동작(short dance routine) 개별적인 요가 동작, ‘개별적인 발레 스텝(individual ballet steps)</li> </ul>
<p>스토리라인은 없더라도, 기본 동작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경우</p>	<p>‘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안무의 순서나 방법(simple routin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가 하더라도 표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교 댄스, 민요 댄스</li> </ul> <p><b>셜위댄스(Shall we dance) 사건</b> <a href="#">_51Page</a> 東京地方裁判所判決 平成24年 2月 28日 平成20年(ワ)第9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가 프로그램과 같은 동작 시퀀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스쇼 안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li> <li>• 마루운동, 스포츠 댄스 [경쟁 부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가요의 아이돌 그룹 안무 (샤이보이)</li> </ul> <p><b>샤이보이 사건</b> <a href="#">_49Page</a>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p>	<p>기존의 안무에 흔히 사용되던 기본 동작의 조합에 불과한 경우</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극저작물은 몸짓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몸짓에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 있어야 한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안무의 창작요소를 ‘신

체 동작의 선택과 배열'로 파악함으로써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연극이나 뮤지컬 등 소위 '극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저작물성 인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무언극·무용극 역시 극적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성 인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우리나라 청소년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난타 역시 대사가 없는 논버벌 공연(non verbal performance)이지만, 저작물성을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

### ▶ 난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104699 판결

원고의 설명내용을 고려할 때, 음악, 동작·안무, 미술 등 난타를 구성하는 다른 표현양식들과 이를 매개로 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각각의 표현양식들과 참여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중첩적으로 얽히는 과정에서, 초연 준비와 연습 과정을 통하여 난타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그리고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교차 등이 구체적이고 독자적이며 창작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연극저작물로서의 난타가 성립, 창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야기 구조(story line)가 없는 무용, 안무, 발레 등도 기본 동작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나 습득하는 '기본동작'을 안무가가 새롭게 재구성하고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무용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대중 가요 안무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개별적으로만 보면 기본적인 동작에 불과하여 저작물성이 없더라도,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 되면서, 순차적, 반복적으로 연결하거나 조합, 배열하여 행하는 신체적 동작 또는 몸짓들의 결합을 통해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 **샤이보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J'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I' 구성원(K, L, M, N)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I'과 'J'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J'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사소하거나 개별적인 몸짓, 동작'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알폰소 리베이로의 '칼튼 댄스'가 단순한 율동(simple dance routine)이므로 안무 작품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알폰소 리베이로(Alfonso Ribeiro)의 칼튼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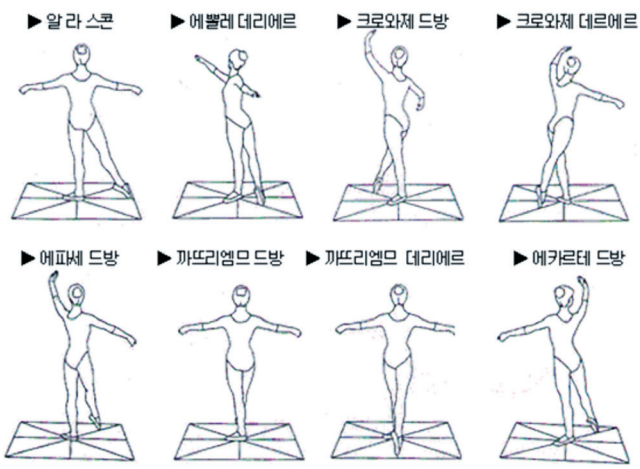


단순 동작이나 발레의 기본 동작과 같은 개별 요소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춤 동작이나 관행적인 표현도 등록될 수 없다.

각각의 장르에서 기본적인 스텝(예컨대 발레에 있어서의 플리에 혹은 피로에테라든지 사교댄스에 있어서의 PV스텝 등)이나 창작의 도구(예컨대 준비자세, 돌기, 착지 등)에 불과한 것은 공유의 영역이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안무의 순서나 방법(simple routines)', '개별적인 발레 스텝(individual ballet steps)' 등도 마찬가지이다.

무용은 기본적인 스텝과 여러 가지 동작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기본 동작들은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동작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변화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발레 기본 동작 중 일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y008&logNo=221411932757&parentCategoryNo=&categoryNo=44&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사교댄스 기본 자세 중 일부



▶ 표 창작의 소재가 되는 기본 동작 [등록 불가]

사교 댄스·민요 댄스는 대중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블루스, 트로트, 탱고, 왈츠, 지르박, 자이브, 살사, 차차차 등 사교댄스는 “누가 하더라도 표현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스텝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는 사교댄스의 안무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기존 스텝의 조합에 머무르지 않고,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東京地方裁判所判決 平成24年 2月 28日 平成20年(ワ)第9300).

▶ 셸위댄스(Shall we dance) 사건

東京地方裁判所判決 平成24年 2月 28日 平成20年(ワ)第9300

사교댄스의 안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스텝과 PV(Popular Variation)스텝 등을 조합하여, 이것에 적절한 어레인지를 더하는 등을 하여 하나의

흐름이 있는 댄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 스텝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는 사교댄스의 안무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기존 스텝의 조합에 머무르지 않고,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사교댄스는 원래 기존의 스텝을 적절하게 자유로이 조합시켜 춤추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경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애호가들도 광범위하게 춤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무에 관한 독창성을 완화하여 조합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근소한 차이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수많은 안무에 관하여 저작권이 성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 안무의 자유 정도가 과도하게 제약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 스텝의 조합에 어레인지를 더하거나 기존의 스텝에는 없는 새로운 스텝 등과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조합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별적인 요가 동작은 물론, 요가 프로그램과 같은 동작 시퀀스 역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마루운동·스포츠댄스, 수중발레, 리듬체조, 피겨 스케이팅 등 율동경기 역시 저작물성이 부정되기 쉽다. 채점을 하여 경쟁을 하는 운동 경기의 범주 내에서는, 경기장 규격과 채점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되므로, 누가 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다[응용미술저작물은 별도로 후술한다].

평면 또는 입체적 공간에 형태나 색채로서 시각적인 미를 표현한 것으로,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외에도 만화, 삽화, 캐릭터, 실내장식, 종이접기, 포스터, 컴퓨터그래픽 등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일품(一品)제작이 아니라 대량 생산되는 경우에도 응용 미술저작물로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넥타이, 의류 등의 직물 도안이 대표적이며, 의자 등 실용품이나 인형 디자인과 같은 3차원적인 제품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 포장지나 카드·청첩장 등의 도안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분류된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5호).

#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저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호 (제목)	창작이(ChangJag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등록: 총 [ ] 건)		
	② 종류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신청인 ^ 등록권리자 v	③ 성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타워) 5층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대리인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점으로 한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증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인터넷: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양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창작이(ChangJagi)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	
	③ 복제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checked=""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량 1	
권리 기재 사항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는 올바른 창작활동을 통해 누구나 저작권자이면서 창작자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몸통은 창작물을 담는 항아리 모양으로 귀엽게 표현하였으며, 양절의 창작물을 담아 보호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피안 피부색은 청적이고 반듯한 성격을 나타낸다. 머리 위의 안테나는 생각과 감정을 발산 및 교감하여 저작물을 송수신하는 통합적 감각기관을 의미하고, 하트모양은 사랑과 존중, 양심을 의미한다. 가슴에 그려진 그림은 다양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상징한다.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내용 작성시 참고)캐릭터의 외모 생김새(형상, 색채)를 위주로 적되 성격·특징(캐릭터성)이 생김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재 (복제물 제출 시 참고)복제물은 캐릭터의 기본형 전면 도안(이미지)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기본형 측면, 후면 이미지 도 추가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등록홈페이지>신청서류받기>복제물 제출 종합 안내 참고				
④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 사항	2차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 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 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 · 배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www.copyright.or.kr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⑯ 성 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한자)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⑰ 국 적	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⑲ 주 소				
	⑳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㉑ 전자우편주소	
	㉒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번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회화, 판화, 조각 등 순수미술 (디지털 이미지 포함)	누가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나 일반적, 관행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 <b>하지정맥류 삽화 사건</b> _62Page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4807
<b>구름 이미지의 저작물성</b> _57Pag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만화, 웹툰, 삽화	
캐릭터 도안 <b>101마리 달마시안 사건</b> _58Page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도446 게임 캐릭터 <b>실황야구 사건</b> _59Page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 63409 판결	
일품제작(一品製作)의 수공적인 미술작품(벽걸이 용단, 도예품, 칠(漆)공예품, 금속조각품 등 공예품)	기능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누가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실용품
서예 <b>영화 축제 사건</b> _60Page 대법원 1998. 1. 26. 선고 97다 49565 판결(확정) <b>Be the Reds 사건</b> _61Page 서울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2002가합79435	명조, 고딕, 이탤릭체, 로마체 등 일반적인 글자꼴(Typeface) <b>서체도안 사건</b> _63Page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로만 구성된 로고 <b>일반적인 문자 형태로 구성된 로고</b> _63Page 창원지법 2010카합286

저작물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p>응용미술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이 있고,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된 도안  <b>히딩크넥타이 사건_62Page</b>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p>	<p>응용미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여 개성 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술저작물]

회화, 판화, 조각 등 소위 순수미술은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리히텐슈타인의 팝아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구름 이미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체적인 윤곽선, 꼬리 형태, 굴곡, 색채, 명암 및 그 조합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모습으로 창작될 수 있는바' 각 구름 이미지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상의 구름 모양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드러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여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 ▶ 구름 이미지의 저작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구름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윤곽선, 꼬리 형태, 굴곡, 색채, 명암 및 그 조합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모습으로 창작될 수 있는바, 원고 각 구름 이미지의 구체적 윤곽선, 꼬리 형태, 굴곡, 색채, 명암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각 구름 이미지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상의 구름 모양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각 구름 이

미지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상의 구름 모양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저작물성이 인정된 구름 이미지



만화는 대부분의 경우 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 웹툰도 마찬가지이다.

캐릭터 도안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다면, 미술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법원은 마시마로 엮기 토끼, '101마리 달마시안' 캐릭터, 피구왕 통키, 헬로 키티 캐릭터 등에 대해 모두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 ▶ 101마리 달마시안 사건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도446

달마시안 종의 개 101마리라는 설정과 이에 따른 101이라는 숫자 및 달마시안 무늬로 만든 디자인으로 표현된 위 회사의 저작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일반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 회사가 창작한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101마리의 달마시안 종의 개만을 연상하게 하며, 달마시안 종의 개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위 회사는 달마시안 종의 개에게 만화주인공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안함으로써 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후략]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0.자 2012카합534 결정).

▶ 실황야구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물성 인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 63409 판결)



일품제작(一品製作)의 수공적인 미술작품인 공예품은 실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순수미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벽걸이 융단, 도예품, 칠(漆)공예품, 금속조각품 등은 일반적인 실용품과 달리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 발현될 여지가 크다.

서예는 미적 감각의 대상이 되는 회화로서의 언어 예술 작품이다. 서예(calligraphy)는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한 글씨체로써 작품화한 서체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 26. 선고 97다49565 판결(원심 :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 ▶ 영화 축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원고가 쓴 위 춘향가의 서체는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所産)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글자를 포함한 위 춘향가의 서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권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 ● 춘향가 작품에서 복제된 '축제'



▶ Be the Reds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2002가합79435 판결

이 사건 디자인 **Reds!** 을 보면 “Reds!” 중 “R”은 “12번째 선수가 되자”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숫자 12를 응용한 형태로 되어 있고, “Reds!”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묵필법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Be The” 부분은 “Reds!” 위에 붓글씨체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그맣고 안정적으로 일반디자인체로 표현되었으며, 색상은 “붉은 악마”의 응원문구인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쓰거나 그 반대로 빨간색 바탕에 흰색을 써서 도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은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 원고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하 생략).

● 저작물성이 인정된 ‘Be the Reds’ 디자인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성과 함께 “분리가능성”이 요구된다. 분리가능성이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넥타이, 의자 등의 실용품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더하여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넥타이나 의류 등에 프린트 된 도안은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난 ‘표현’에 해당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태극 문양을 응용한 넥타이 도안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소위 ‘히딩크넥타이’ 사건이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에 의해서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 ▶히딩크넥타이 사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

#### • 히딩크 넥타이와 모방품 (히딩크 넥타이의 저작물성 인정)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술저작물]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정맥류 삽화’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삽화는 ‘동일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림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 ▶하지정맥류 삽화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4807

하지정맥류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들은 홍보용 홈페이지에서 하지정맥류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그리거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분에 비해 어둡게 변한 하체의 모습을 그린 삽화를 흔히 게시하고 있고(을3의 2·3) 원고의 삽화는 그와 같은 삽화들과 얼굴의 표정이나 옷색깔 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물이 취하고 있는 포즈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표

현기법 등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원고의 삽화는 질병의 증상을 설명함에 있어 통증의 원인과 부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동일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림의 수준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서체 도안 사건

법원은 ‘서체도안’ 그 자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 일반적인 문자 형태로 구성된 로고

일반적인 문자 형태로 구성된 로고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은 **BIOLEE**, **acnépris**, **ACNOZEN**, **ATOPILLA**, **reneway** 등의 로고에 대해 “이는 영문의 배열에 불과하여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법 2010카합286).

공예품 중에도 기능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누가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권 등록 신청은 반려되어야 한다.

응용미술의 경우 실용적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나(선택의 폭이 제한적), 다른 제품들에도 흔하게 이용되어 온 도안인 경우 저작물성이 없다. ‘자연에 실재하는 동, 식물을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것들은 등록되기 어렵다.

## 5) 건축저작물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건축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건축물은 토지와외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임시적으로라도 토지에 정착된 형태로 구축된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물론 교회나 정자(亭子), 전시장, 가설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건축저작물의 개별적 구성요소는 건축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지만(2005가합3613, 2013가합23179), 정원이나 다리, 탑과 같은 건축물도 독립적인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주거목적 없는 실외공간'인 골프코스도 건축저작물로 인정된다.

### [TIP] 건축설계도 - '건축저작물' or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모형·설계도서는 '도형저작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다만 저작물 종류에 따라 등록여부와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 유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건축설계도의 경우 건축저작물로 등록신청하면 구현된 '건축물 외관'의 창작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나, 도형저작물로 등록신청하면 '설계도 자체'의 창작성을 판단하게 된다. 당연히 권리 범위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불과하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계 호 (제 목)	창작자와 나눔이의 쉼터(The Shelter of ChangJagi and Nanum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등록: 총 건 )		
	② 종 류	건축저작물 > 건축물		
신청인 ^ 등록권리자 v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 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타워) 5층	000000-0000000 000-00-00000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기점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공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의 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인 터 넷: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목 (제목)	창작이와 나눔이의 쉼터(The Shelter of ChangJagi and Nanumi) <small>* 외국어는 한글 병기</small>		② 종류	건축저작물 > 건축물	
	③ 복제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checked=""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량	1
⑤ 내용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팔각경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는 유연한 곡선형식을 취하였다. 처마와 기둥을 모던하고 세련되게 미니멀리즘적으로 만들어낸 건축물이다. <small>*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내용 작성 시 참고) 건축저작물의 분류에는 건축실제도, 건축물, 건축물모형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기재. 상기 예시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전체 외관 설명 및 건축 특징을 기재한 것임.            (복제를 제출 시 참고) 복제물은 실물 건축물의 전체 외관 형태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며, 건축실제도의 경우는 건물의 입·배·측면도의 이미지 파일을 필수로 제출하며 층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은 추가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등록홈페이지&gt;신청서류별기&gt;복제를 제출 종합 안내 참고</small>					
⑥ 전통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비밀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목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구분		
	⑬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문화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⑯ 성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한자)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에 기재하지 않음 ⑰ 신청인과 같음	⑰ 국적		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㉑ 전자우편주소		
	㉒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번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독특한 외관과 심미감을 추구하는 건축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 인정된다면, 건축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p> <p>●경주엑스포 상징건축물 <b>경주타워 사건</b> _68Page</p> <p>서울고등법원 2011.3.23. 선고 2010나47782 판결</p> <p>●카페 <b>카페 테라로사 사건</b> _69Page</p> <p>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p> <p>●골프장 <b>골프장 골프 코스 사건</b> _69Page</p> <p>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	<p>실용적,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p> <p>관행적인 형태, 보편적 건축물은 저작물성이 부정</p>
	<p>●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p> <p>실용적 기능에 충실한 일반적인 건축물, 아파트 등 집합건물</p> <p><b>청주청원구아파트 사건</b> _71Page</p> <p>서울고등법원 2004.9.22. 자 2004라312 결정</p>
	<p>흔히 사용되는 방식, 관행적인 인테리어는 등록이 불가</p> <p>●사무실의 공간을 고객공간, 작업공간, 사무공간으로 구분</p> <p><b>강남지점 인테리어 사건</b> _71Page</p> <p>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12. 선고 2009가합33025 판결</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정한 교외에 실용성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독특한 외관과 심미감을 추구하는 특이한 펜션이나 예쁜 카페들은 건축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랜드마크가 되는 상징적 건물이나 문화예술공간으로 독특한 외관을 가진 극장, 공연장 등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경주엑스포 상징건축물 '경주타워' 사건, 카페 테라로사 사건 등이 있다. 다소 독특한 사례로 골프코스에 대해 건축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 경주타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3.23. 선고 2010나47782 판결

원고는 피고의 공고에 응모하면서 상징건축물 설계의 전체 구성에 관하여 '대지(大地), 돌(石,) 금속(金屬), 유리(琉璃) 및 숲(綠)으로 틀을 잡고, 그 중 '유리의 탑'의 '비움(Void)'에 상징건축물을 투영하여 음양을 실존화시키는 상징탑을 설정한 사실, 원고가 설계한 상징탑은 높이 70m의 유리탑으로 가운데에 석탑을 음각하여 그 자체로 석탑의 존재와 음양(陰陽)을 상기시키는 모양을 표현하는 한편, 상징탑 최상층에 전망대와 카페를 설치하고 그 아래 두 개 층에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프레젠테이션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상징건축물의 설계는 독자적인 사상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출처: 경주시민신문

▶ 카페 테라로사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사천점 건물



출처: 테라로사 홈페이지, 로톡뉴스에서 재인용

▶ 골프장 골프 코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확정)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구성요소의 배치 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는 인간의 사상이 반영되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간생략]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비록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이 주거

가 가능한 구조물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통상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고,...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응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축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이다. 실용적,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건축물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건축 기술의 한계와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4.10.6 자 2004라21 결정). 따라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성과 독창성이 드러나는 건축물이 거의 없다. 법원은 “기존 건축저작물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통상의 개성이 없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창작성이 긍정되지 않는다.

### [평범한 아파트 설계도 : 등록 불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유행, 효율성 등을 구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개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세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29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설계상의 특징은 “34-35평형 아파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실의 수 등의 제약요소로 인하

여 상정이 가능한 극히 제한된 표현형태의 하나”라고 판단하며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 청주청원구아파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22. 자 2004라312 결정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른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관행적인 인테리어 : 등록 불가]

다른 건축물에도 흔하게 이용되어 온 관행적인 형태의 인테리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타라 강남지점 인테리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12. 선고 2009가합33025 판결

위 가이드라인에 내부 작업공간, 사무실, 셀프존(고객 대기공간)을 구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나아가 인쇄나 제본 등을 주로 하는 영업장에서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쇄장비 등을 한 쪽으로 모으고, 사무업무를 보는 책상 등을 그와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간 구분 사실만으로는 위 설계도가 원고가 독창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6)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과 별도로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광선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이용하여 인물·풍경 기타 형상을 필름·전자적 저장매체·종이·직물 등 평면에 표현한 것을 말한다. 대상(초상, 풍경, 시사사건 등) 및 목적(아마추어 또는 프로의 사진, 예술사진 또는 광고사진 등)을 불문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하여, 사진적인 창작에 유사한 것들을 모두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개방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그라비아(사진요철, photogravure)인쇄, 사진염색, 청사진, 전송사진 등도 사진저작물에 포함된다(법 제4조 제1항 6호).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도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하급심에서는 인물 사진의 디지털 보정을 창작성의 요소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14. 선고 2015가단118639 판결).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b>창창이와 나눔이의 일상(The Daily Life of ChangJagi and Nanumi)</b>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 ) 건		
	② 종 류 <b>사진저작물</b>		
신청인 ^ 등록 권리자 v	③ 성명명 (법인명) <b>(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b>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④ 국 적 <b>대한민국</b>		
	⑥ 주 소 <b>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층</b>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b>02-0000-0000 (010-0000-0000)</b>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b>kim.changjag@copyright.or.kr</b>
	⑨ 신청인 구분 <b>[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b>		
대리인	⑩ 성명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b>*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b>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기점으로 한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신청물 10건 30,000원 효과 시 추가건당: 인 터 넷: 10,000원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2.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판·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획 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양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목 (제 목)	창작이와 나눔이의 일상(The Daily Life of ChangJagi and Nanumi) * 원주어는 한글 병기		② 종류	사진저작물
	③ 복제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checked=""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량	1
저작물의 특성	⑤ 내용	창작이와 나눔이가 함께 재미있게 노는 모습의 찰라를 포착하여 카메라에 담은 사진이다.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과 활짝 웃는 모습을 잘 살렸다. 촬영정보 캐논 EOS 60D/ F 2.4/ 1/4000sec/ ISO500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내용 작성 시 참고)사진저작물은 촬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사진기와 같은 기계로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사진의 주제 및 표현상의 특징(예: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앵글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조리개값, 셔터스피드, iso, 노출시간, 감도, 초점거리 등)를 기재. 상기 작성된 예시의 모든 특징을 기재해야하는 것은 아님			
	⑥	④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배부사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집·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국가	⑬ 공표매체정보 년화량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⑭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⑯ 성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한자)	
저작자의 정보	⑰ 국적	⑱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㉑ 전자우편주소	
	㉒ 사항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번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사람이 구도·셔터속도 등을 선택하여 촬영한 대부분의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사진작가가 아니더라도, 구도, 배치, 셔터 속도 등을 조절하여 촬영한 사진</li> <li>●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일반인의 사진</li> <li>●애견인이 반려견 등 동물을 찍은 사진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73463 판결</li> <li>●풍경 사진</li> </ul> <p><b>술섬 풍경사진_76Page</b>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사진</li> <li>●컴퓨터나 기계적 작동으로 촬영된 사진(예: 과속 방지 카메라의 자동 사진)</li> <li>●사진이나 기타 인쇄물의 단순한 복제에 지나지 않는 것 : 영인본, 서화집, 사진첩 등을 평면적으로 복제한 것, 판화사진</li> <li>●기계의 부품 등의 카탈로그 사진</li> <li>●기술 장면의 촬영 등 사실 전달을 위한 의료용 사진</li> </ul> <p><b>모발이식수술사진 사건_78Page</b> 서울중앙지법 2007. 6.21. 선고 2007가합16095 손해배상</p> <p><b>고주파수술사진 사건_78Page</b>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p>
<p>[인물사진] 인위적으로 피사체의 배치나 조합 등을 통해 창작성이 발현된 사진 <b>Burrow-Giles Co. v. Sarony, 111 U.S. 53 (1884) 사건_77Page</b></p>	<p>[인물사진]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진 실용만의 목적으로 제작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사진</p>
<p>[광고 사진] 광고용 사진 중에서도 구도, 배치, 셔터 속도 등을 조절하여 촬영한 경우</p>	<p>[광고 사진]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진 제품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사진 <b>광고용 햄사진 사건_79Page</b>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p>
<p>cf. 원숭이 등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촬영한 사진[등록 반려]</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람이 구도·셔터 속도 등을 선택하여 촬영한 대부분의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 ▶애완견 사진을 견주가 촬영한 사진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73463 판결

‘원고가 사육하던 애완견들의 생김새, 색깔과 이미지 등에 따라 바닥과 배경의 색상 및 소재, 애완견이 착용하는 장식물 및 주변소품 등을 결정하고, 애완견의 배치, 조명의 선택, 촬영 각도, 움직이는 애완견들에 대한 촬영순간의 포착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솔섬 풍경사진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풍경 사진의 경우에 촬영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Pine tree, Study1과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00의 ‘아침을 기다리며’는 모두 강원도 삼척시의 솔섬을 촬영하였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양자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마추어 작가나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연 대상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 마이클케나(좌)와 김00의 사진저작물(우)



인물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피사체의 배치나 조합 등을 통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피천득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2009가합11723 판결), 결혼식 촬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신랑, 신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도 있다(2015가단118639 판결).

▶ **Burrow-Giles Co. v. Sarony, 111 U.S. 53 (1884) 사건**

Sarony는 유명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진이 후에 Burrow-Giles Co.에 의하여 무단으로 복제되어 판매되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창조적인 정신적 관념으로부터 만들어냈고..., 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방식, 배치, 표현된 바에 의하여 사진이 촬영되었다’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Burrow-Giles Co. v. Sarony**

\*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초로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  
Cf. 누가 찍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증명사진은 등록 불가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누가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나 일반적, 관행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촬영자의 개성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진은 저작물성이 부정되기 쉽다. 대법원이 사진의 저작물을 부정한 대표적인 2가지 사례는 ①‘광고용 햄사진[남부햄]’ 사건(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과 ②‘고주파 수술 사진’ 사건(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이다. 그 외에도 영인본(影印本), 증명사진, 과속카메라 사진 등이 반려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 ▶ 모발이식수술사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모발이식수술 자체에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하여 원고 사진들에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사진들은 모두 원고가 모발치료를 담당하였던 환자들을 피사체로 선정하여 그들이 원고로부터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수술의 전후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고, 위 사진들의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배경, 구도, 조명, 빛의 양 등에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진들은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 ▶ 고주파수술사진 사건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주파치료술 장면 중 일부



▶ 광고용 햄사진 사건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위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생략]...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②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컴퓨터게임 동영상, 뮤직비디오 등이 해당하며, 게임 영상도 영상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TIP] 영상제작자와 저작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영상제작자는 구별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양도 등록' 절차에 따라 영화감독, 프로듀서 등 저작자가 등록의무자가 되고 영상제작자가 등록권리자가 되며, 양도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호 (제 목) 장외이와 나눔이의 사랑 이야기(The Love Story of Changagi and Narum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류 영상저작물 > 극영화			
신청인 > 등록권리자 <	③ 성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타워) 5층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 ] 상속인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⑯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점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각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규정

첨부 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방문·우편: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인 터 넷: 20,000원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함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 작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창작이와 나눔이의 사랑 이야기 (The Love Story of Changlagi and Narum)		② 종 류	영상저작물>극영화	
	③ 복제물 형 태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1
	⑤ 내 용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서로 원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창작이(남자)와 나눔이(여자)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자 양 집안은 발각 뒤집힌다. 처음에는 반대만 하던 양가 집안 어른들이 둘의 진심어린 사랑을 보고 감명받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음으로써 둘이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려냈다. 이 영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흥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제(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제란 부속 시 별지 기재 첨부) (내용 작성 시 참고)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저작물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는 것을 말함. 내용은 영상의 주제 및 표현상의 특징(시각적 장면 연출, 촬영, 편집 등)에 대하여 기재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비 록 사 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 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 · 배포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한국극장 용산지점 상영
			⑯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⑮ 성 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한자)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기재함 * 신청인과 다른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과 같음	⑰ 국 적			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 소					
	⑱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⑲ 전자 우편주소	
	⑳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2) 공표란 대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면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사람이 촬영한 대부분의 영상물 사상 감정이 표현된 1인 미디어 영 상,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뉴스 영 상 등 <b>외국 방송사 뉴스 저작물 사건_83Page</b>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두4701 판결 <b>'모기와와 전쟁 뉴스보도 영상물'</b> <b>사건_83Page</b>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 나52200 판결 광고·홍보용 영상, 게임 영상 등 <b>PC방 플래쉬 영상_83Page</b>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3가합7485 판결</p>	<p>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p>
<p>편집 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방송 사의 실시간 중계 영상, 편집된 뉴 스 영상</p>	<p>길거리 CCTV, 고정된 카메라로 단순 촬영하는 경우.</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영상들도 저작물성이 대부분 인정된다.

촬영 대상이 저작물일 필요도 없다. 촬영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어도 편집 및 영상 기술이 들어가 영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춘다면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다. 야구 경기 그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명의 카메라 감독이 이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만든 야구 중계 영상은 저작물성이 있다.

뉴스 영상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 녹음하는 과정, 편집하는 과정 등에서 창작성이 발현될 여지가 많다.

▶ 외국 방송사 뉴스 저작물 사건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두4701 판결

“원고가 송출 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은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판시하였다.

▶ ‘모기와외의 전쟁 뉴스보도 영상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이 사건 뉴스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된 사실과 기자의 평가가 담긴 보도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고 재구성하여 편집한 영상저작물이고...

광고·홍보 영상도 영상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 영상이라는 이유는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PC방 플래쉬 영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3가합7485 판결

이 사건 영상은 원고의 PC방 내부시설에 관한 사진으로서, 컴퓨터 및 칸막이의 배치, PC방 내 공간의 효율적 구분, 고급스럽고도 현대적인 인테리어, 고객들의 편의성 등에 관한 이미지 및 원고의 ‘Zone & Zone’이라는 상호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PC방 한 쪽 모서리에서 PC방 가운데 쪽으로 향하게 하여 칸막이 옆면의 ‘Zone& Zone’이라는 글자가 사선(斜線)으로 선명하면서도 입체감 있게 드러나게 하고, 천장과 벽면 및 컴퓨터와 칸막이 부분이 조화롭고 편안하게 보이게 하며, 푸른색의 색조를 주로 사용하여 고급스럽고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영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플레이어 조작에 따라 영상이 달라지는 게임 영상도 영상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Stern Electronics, Inc. v. Kaufman, 669 FF.2d 852(2d Cir. 1982)).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고정적으로 설치된 카메라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단지 기계에 투과된 영상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길거리 CCTV와 같이 자동적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창작성이 없다. 공연을 고정된 카메라로 단순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8호).

해도(海圖), 관광지도, 자동차설계도, 통계 그래프, 인체모형, 동물모형, 지형모형 등이 이에 포함된다. 평면적인 설계도, 분석표, 그래프, 도해 등이 라든가, 입체적인 지구본, 인체모형, 동물모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 [TIP] 지도 : 도형 저작물 or 미술저작물 ?

지도는 도형저작물의 대표적인 예시이지만, 일부 관광지도처럼 만화적 요소를 부가하는 등 "정보를 미술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미술저작물에도 해당될 수 있다.

### [TIP] 건축물의 "설계도면" : 도형저작물 or 건축저작물 ?

저작권법은 건축을 위한 '모형 혹은 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즉 설계도면 중에 '건축저작물의 특성을 가진 경우' 건축저작물로도 등록할 수 있다. 법원은 '모형 및 설계도서'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려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10.29. 선고 2008나4461 판결(해운대 등대도안 사건)].

실무상 건축저작물일 경우 정면도, 입면도, 배면도, 측면도 등 도면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평면도밖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형저작물의 설계도로 등록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도형저작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준과 권리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건축저작물은 설계도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된다. 도형저작물은 설계도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심사 기준이 다르다. 법적 권리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전시권을 부여받으며,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도 제35조의 특별한 조문이 있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목 (제 목)	창작과 나눔 지도(The Map of Creation and Sharing)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1건)	
	② 종류	도형저작물 > (특수목적)지도	
신청인 ^ 등록권리자 v	③ 성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 ⑥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타워) 5층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I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등록 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등록 별첨)	
대리인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점으로 한 경우엔「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수수료(1건)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창작과 나눔 지도 (The Map of Creation and Sharing)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도형저작물 > (특수목적)지도	
형태	③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량	
					1
⑤ <b>내 용</b> 전국의 저작권 등록 건수로 살펴본 창작 현황과 공유저작물 기증으로 살펴본 나눔 현황을 지도화하여 나타내었다. 창작 현황과 나눔 현황을 강조하여 왜곡하여 지도를 표현함으로써 일반 사실적 지도와는 차별화된다. ※ 흥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⑥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개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 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 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 · 배포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창작출판사 (1,000부 발행)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⑯ 성 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⑰ 국 적		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⑱ 주 소				
	⑳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㉑ 전자 우편주소	
	㉒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번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예외적으로 창작적 개성이 발현된 지도</p> <p><b>‘춘천시 관광지도’ 사건</b><sub>.88Page</sub> (서울중앙지법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의도적인 왜곡 표현으로”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특징</p>	<p>대부분의 지도, 설계도·도면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p> <p>대부분의 지도</p> <p><b>여행천하유렵(트래블월드) 사건</b><sub>.89Page</sub>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p> <p><b>오니온맵 사건</b><sub>.89Page</sub> 구조물의 본래의 형상에 가깝게 입체적인 형태로 표시하되 지도의 목적에 맞도록 단순화한 것일 뿐(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298 판결)</p>
	<p>대부분의 설계도·도면</p> <p><b>현대방폭전기 기계장치 설계도 사건</b><sub>.90Page</sub> _90Page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 4848 판결</p> <p><b>종이접기 도면 사건</b><sub>.90Page</sub>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6073 판결</p> <p><b>아파트 평면도 사건</b><sub>.91Page</sub> _91Pag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p>
	<p>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양식 시간표 양식, 대차대조표 등 회계 양식, 다이어리 양식, 은행의 수표양식, 경기 스코어 카드, 주소록 양식, 리포트 양식, 주문서 양식 등</p> <p><b>Baker v. Seldon 사건</b><sub>.92Page</sub> _92Page Baker v. Seldon, 101 U.S. 99 (1879)</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법원이 보는 창작성의 기준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시력검사를 위한 시력표에 대해서도 도형저작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도2101 판결).

지도, 약도, 설계도 등도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한 것은 물론이나, 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발현되기 어렵다. 특히 지도의 경우 등록 가능한 경우가 드문데,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심하게 왜곡하거나 만화, 그림 등을 추가한 '특수 지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원고의 지도는 의도적인 왜곡 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남이섬과 같은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즉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거나 일반적, 관행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만으로 된 경우가 흔하다.

대표적으로 지도의 경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리 약속된 특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창작적인 개성이 발현되기 어렵고, 지도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 ▶ 여행천하유렵(트래블월드) 사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지도 부분도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이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 ▶ 오니온맵 사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298 판결

도시의 여러 구조물 중 주요 관광지나 구조물만을 선택하여 지도에 표시하거나, 전체 도시 중 주요 관광구역 내지 상업구역을 선택·구획하여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 및 구조물 등을 실사에 이를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등의 방식은 이 사건 오니온맵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 이미 국내외 디지털 지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인 점, [중간생략] 이 사건에서 오니온맵이 주요 구조물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조물의 본래의 형상에 가깝게 입체적인 형태로 표시하되 지도의 목적에 맞도록 단순화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표현에 어떤 창작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외에 특정 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특정 구역을 부각시키는 방법에서 어떠한 창작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오니온맵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면도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렵다. 즉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도면, 설계도의 경우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 [TIP] 기술·기능의 독창성과 도면의 저작물성

도면을 통해 구현된 기술, 기능의 독창성은 도형저작물의 보호와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아파트 구조가 독특하다고 하여 아파트 평면도가 도형저작물로 등록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 ▶ 현대방폭전기 기계장치 설계도 사건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이 사건 도면은 현대방폭이 제작한 실링휘팅, 케이블그랜더, 500와트 더블항공장해 등의 제품도면으로서 위 제품들의 구조, 규격, 기능 등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으로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설령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종이접기 도면 사건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6073 판결

이 사건 쟁점 종이접기 부분의 순서도에서 앞, 뒷면을 나타내는 방식이나 접은 선, 각종 화살표 기호 등은 국내 및 일본의 종이접기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호 또는 도식이고, 위 순서도에 부가된 수학적 설명 등은 수학 분야 등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한편 이 사건 쟁점 종이접기 부분은 국내 및 일본에서의 관련 종이접기 순서도에 비하여 그 배치나 순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종이접기 방법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표현형식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설명한 것도 아니며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종이접기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종이접기 부분은 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아파트 평면도 사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서식지(blank form)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미국 저작권청 규정에서는 시간표 양식, 대차대조표 등 회계 양식, 다이어



##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즉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것일 것, ②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③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일 것 등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원시코드와 목적코드(source code and object code) 모두 프로그램의 개념에 포함된다. 다만 주석은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전체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인 경우에 그 것이 몇 개의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모듈(module)이나 서브루틴(sub-routi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들도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TIP] 순서도(flow chart)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가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 사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순서도(flow chart)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자료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 형식만 보호한다. 아이디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가 가능하며,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

#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프로그램 저작물	① 제호(명칭)	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② 창작연월일 <sup>1)</sup>	2020. 8. 1.	③ 공표연월일 <sup>2)</sup>	2020. 8. 5. <sup>3)</sup>
신청인 (등록권리자)	④ 성명 (법인명)	(한글) 주식회사 창작기업	⑤ 국적	대한민국
		(한자) (영문)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2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전자우편주소) reg@copyright.or.kr	⑦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자택(사무실)  (전화번호) 02-1234-5678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V] 저작자 본인 [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⑫ 주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주식회사 정품사용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수수료(1건)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 60,000원 인터넷 : 5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러편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4[2]1[9]0

1. 제호	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2. 주요 내용	적용 분야	사무관리 > 기타사무관리S/W
	특징	시각장애인들이 윈도우환경에서 프로그램 운용 중에 필요한 각종안내와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요 기능	테스트메일발송, 편지작성·수정기능, 전자메일 발송기능, 발송메일 로그인 생성
	사용 방법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작동, 제어 <i>* 제출된 복제물의 사용방법 기재</i>
	판매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업용 <input type="checkbox"/> 비상업용
3. 사용 기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IBM+PC호환기종 <input type="checkbox"/> 매킨토시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input type="checkbox"/> PDA <input type="checkbox"/> 기타(   )	
4. 사용 OS	WINDOWS95/98/NT	
5. 사용 언어	VISUAL BASIC, C++	
6. 필요한 프로그램	해당없음	
7. 규모(byte 등)	2,000,000 byte	
8.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만 해당함)	성명(생년월일) *내국인 예시 : 김작권(891202) *외국인 예시 : Nanumi(960204)  *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없습니다.	
9. 복제물의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스 파일 <input type="checkbox"/> 오브젝트 파일 <input type="checkbox"/> 실행 파일 (수량 : CD1개)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저작물성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프로그램 설계하기 위한 언어(프로그래밍언어)로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 소스파일, 오브젝트파일, 실행파일 등</p> <p><b>하위프로그램의 저작물성</b>_96Pag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3가합95465 판결)</p>	<p><b>단순한 연산식으로 구성된 엑셀파일</b> _98Page 수원지방법원 2003. 9. 23 선고 2002고단5997 판결</p>
<p><b>폰트프로그램(서체파일)</b>_97Page - 서체파일은 단순한 데이터파일 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제작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p>	<p>워드파일, 그림파일, 소리파일, 동영상 파일 등 데이터파일</p>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게임프로그램이나 윈도우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 워드, 글 등 응용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프로그램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 하위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3가합95465 판결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글꼴(폰트) 파일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같은 취지에서 엑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내의 매크로 언어(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 :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VBA)로 표현한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

#### ▶ 폰트프로그램(서체파일)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서체파일은 그림을 그리는 논리·연산작용에 해당하는 '지시·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서체 1벌을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편리하고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내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서체를 출력시킬 수 있어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고,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은 아니다.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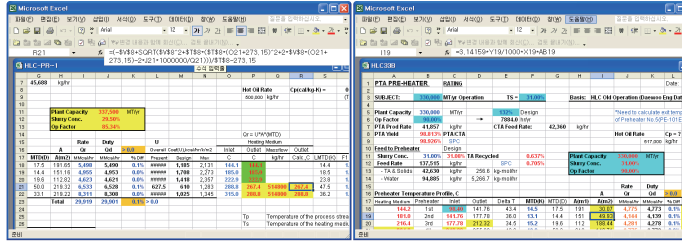
문서파일(한글, 워드), 소리,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등록될 수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것일 것 ②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③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일 것 등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데이터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법원에서는 엑셀 파일에 대해서는 창작자의 개성 등 저작물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 ▶ 단순한 연산식으로 구성된 엑셀파일

수원지방법원 2003. 9. 23 선고 2002고단5997 판결

EXCEL 프로그램의 연산기능을 활용하였을 뿐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EXCEL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의거, 실질적 유사성], ② 수정·증감이 가해져야 한다[실질적 개변]. 번역된 어문저작물, 편곡된 음악저작물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소설·웹툰의 영상화·게임화 등의 사례가 많다.

### [TIP] - 1개의 신청으로 2개의 등록 가능한가?

번역물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이기도 하고 2차적저작물이기도 하다. 1저작물 1등록 원칙에 따라 2개로 등록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단순히 어문저작물로 등록하기보다는, 실무상 2차적저작물 중 어문저작물로 등록하면 된다(2차적저작물>어문>번역물). 편곡의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2차적저작물>음악>편곡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새천년 홍길동전(The New Millenium Hong, Kil-Dong)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 류	2차적저작물 > 어문 > 각색		
신청인 (등 록 권 리 자)	③ 성 명 (법 인 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 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층	000000-0000000 000-00-00000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본인 <input type="checkbox"/>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대 리 인	⑩ 성 명 (법 인 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것으로 한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각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인 터 넷: 20,000원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함이다)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질지(80g/m<sup>2</sup>))

# 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양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 물 내 용	① 제 호 (제 목)	새천년 홍길동전(The New Millenium Hong, Kil-Dong) <span style="float: right;">* 외국어는 한글 병기</span>	② 중 류	2차적저작물 > 어문 > 각색		
	③ 복제물 형 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1	
⑤ 홍길동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2차적저작물이다. 재벌가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겪게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함을 들고 일어나 각종 비리와 만행을 일삼는 이들을 응징하는 현대판 의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⑥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한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④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예 목 사 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 호	홍길동전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균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sup>1)</sup>	2020.8.5			
	공 표	⑪ 공표연월일 <sup>2)</sup>	2020.8.5 <sup>3)</sup>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창작출판사 초판 1,000부 발행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⑯ 성 명 (사업자명)	한글) 김창작 영문) 한자)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⑰ 국 적			⑲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⑱ 주 소			⑳ 전자 우편주소		
	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㉒ 사항연도	* 저작자 사망 시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창작연월일은 해당 저작물 창작의 시작시점이 아닌 완료시점을 의미(다만 미완성인 상태로 권리가 발생하며 그 상태까지의 창작연월일을 기재)
- 2) 공표란 공중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어떠한 공표된 경우 최초의 공표연월일을 기재
- 3)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개변</li> </ul> <p><b>번역</b>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서적의 번역</li> </ul> <p><b>건축제도 관련 번역서 사건</b> <a href="#">_102Page</a> 서울동부지법 2013.8.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소한 개변이나 누가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변경 (노동력의 투여 등 비용과는 무관)</li> </ul> <p><b>기계 번역, 누가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실용문의 단순 번역, 단순히 고어를 현대어로 바꾸는 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맹인용의 점자역이나 암호문의 해독, 속기기호로 된 문서, 점자 등을 보통의 문자로 된 문서로 전환하는 것</li> </ul>
<p><b>편곡</b> :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p> <p><b>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건</b> <a href="#">_103Page</a>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p> <p>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샘플링 사건 : 잡음을 제거하고 나아가 일부 손상된 부분을 회복</li> </ul> <p><b>카라안 음반 복각 - 디지털샘플링 사건</b> <a href="#">_105Page</a>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p>
<p><b>변형</b></p> <p><b>광화문 모형 사건</b> <a href="#">_103Page</a> (2016다227625 판결) :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p>	<p>원저작물을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축소 또는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li> </ul> <p><b>L. Batlin &amp; Son, Inc. v. Snyder</b> <b>536 F.2d 486(2nd. Cir. 1976)</b> <a href="#">_105Page</a></p>

### 각색·영상제작·그밖의 방법으로 개작

각색 - 소설 등 비연극적 저작물을 연극 또는 영화에 적합하도록 각본화하는 것(일반적으로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의 대본으로 만드는 것)

영상제작 - 소설, 만화, 각본 등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는 것

기술적 처리를 통해 화보집을 모바 일용으로 만드는 것, 기존 그림을 실루엣 처리한 것

### 문제집

●교과서를 이용하여 문제집을 만드는 것(2013가합5771)

### 요약문

●만화나 서적 등 저작물의 요약 (2011도3599)

발췌문 : 원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

탕위임(覃卓) 편저 번역 사건\_106Pag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국 서적 번역이나 영화 자막 등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 불리기도 한다. 의역이 포함된 대부분의 번역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서울동부지법 2013.8.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 ▶ 건축제도 관련 번역서 사건

서울동부지법 2013.8.28. 선고 2013가합4997, 5006 판결

이 사건 번역서에는 번역투 표현이 아닌 국어문법에 맞는 표현, 외래어가 아닌 우리말식 표현, 구어체 표현, 직역하지 아니하고 의역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번역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편곡’이란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악곡을 변조하여 악기 편성, 리듬, 템포, 하모니 등을 변화시키는 행위이며, 원곡에 실질적 개편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은 등록이 가능하다.

어려운 곡을 쉽고 재미있게 어린이용으로 수정하거나 컴퓨터 연주가 가능하도록 편곡한 것도 2차적저작물이 된다. 주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에 대해서도 ‘단순히 화음을 넣는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음악적 재능을 투입하여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마로니에’ 사건 (서울민사지법 1995.1.18. 자 94카합9052 결정)).

#### ▶ 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건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광화문 건축물을 변형하여 모형으로 만든 경우에도,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광화문 모형 사건(대법원 2018.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에서 이미 공중의 영역에 있는 예술품을 다른 매체로 재현한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 광화문 모형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과서를 이용하여 문제집을 만드는 것(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771 판결), 서적의 요약(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도 2차적저작물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소한 개변’(trivial variation)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 있어야만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다. 즉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 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누가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어문에서 단순 기계 또는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실용문의 번역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 단순 기계 번역 또는 카달로크 등 실용문을 사전적 의미로 바꿔 놓은 정도의 번역은 개성 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등록되기 어렵다.
- 인용의 점자역이나 암호문의 해독, 속기기호로 된 문서, 점자 등을 보통의 문자로 된 문서로 전환하는 것도 2차적 저작물 중의 하나인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음악에서 변조, 수보화 등으로는 등록 불가하다.

- 악곡을 단지 한 옥타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는 편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한 변조나 기술방식만 바꾸는 것 예컨대 하모니카용으로 단순하게 수보화하는 것은 편곡이 아니다.
- 피아노곡을 바이올린용으로 단순하게 바꾸는 것도 등록이 불가하다.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여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민요를 채보하는 것만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 디지털 샘플링, CD 마스터링의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2차적저작물은 아니다.

▶ 카라안 음반 복각 - 디지털샘플링 사건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문제된 2장은 도이취 그라모폰 게엠베하(Deutsche Grammophon GmbH)가 외국에서 녹음한 아날로그 음원을 가지고 디지털 샘플링 작업을 하면서 실제 연주에 근사한 음질을 재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잡음을 제거하고 나아가 일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되 연주의 속도, 리듬, 가락 등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업을 가리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 결국 이 사건 CD 들은 위 부칙에서 말하는 계속 이용이 가능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단순한 축소, 재료·포맷 변경, 일부 발체 등도 등록 불가하다.

원저작물을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미국의 L. Batlin & Son, Inc. v. Snyder 사건에서 미국 제2항소법원은 실질적 개편을 인정하지 않았다.

▶ L. Batlin & Son, Inc. v. Snyder 536 F.2d 486(2nd. Cir. 1976)



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는 발체(extraction)는 요약과 달리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 탕취잉(覃卓) 편저 번역 사건

사건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수록된 이야기들 중 2번째, 4번째, 7번째 및 28번째 이야기(이하 '2번째 등 이야기'라고 한다)는 갑 제37호증에 있는 원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을 뿐이고 그 표현 형식에서 저작자 스스로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을 가미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8호). 즉 편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편집물에 해당해야 하며, ②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단일한 소재 또는 소수의 소재만으로는 편집물이 아니므로 애초에 편집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등록될 수 있는 편집저작물의 예시로는 신문, 잡지, 백과사전, 논문집, 미술집, 명곡집, 직업별 전화번호부, 연감,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

**[TIP]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 or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TIP] '소재'는 저작물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을 수집한 '민속도감'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물	창작자와 나눔이의 홈페이지 (The Homepage of ChangJagi and Nanumi)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건)			
② 종류	편집저작물 > 홈페이지			
신청인 ↑ 등록권리자 ↓	③ 성명 (법인명)	(한글) 김창작 (한자) (영문) KIM CHANGJAG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안로 107(케이트웨이타워) 5층		
	⑦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0000-0000 (010-0000-0000)	⑧ 전자우편주소	kim.changjag@copyright.o r.kr
	⑨ 신청인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 별첨)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등 <input type="checkbox"/>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 별첨)		
대리인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⑭ 전자우편주소		

※ 등록을 거기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김창작 [서명 또는 날인]

한국저작권위원회 회국

첨부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4. 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인터넷: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저작물성<sup>4)</sup> 판단기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p>일반적인 전화번호부, 한자 옥편, 가나다순 사전  <b>ABC, 가나다순 전화번호부</b>_111Page                      499 U.S. 340 18 U.S.P.Q. 2d 1275 (1991)                      일반적, 관행적으로 흔히 사용되어 온 선택 배열</p>
<p><b>미술사 연표 '20세기 미술의 모험'</b>_110Page                      대법원 92마1081 결정                      -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독자적인 창작성"</p>	<p>일반적인 연표</p>
	<p>기능성, 실용성 등의 이유로 누가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b>법조수첩</b>_111Page                      대법원 2001다9359 판결</p>
<p><b>입찰경매정보지 '한국입찰경매정보'</b>_110Page                      대법원 96도2440 판결                      -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p>	<p>단순한 기계적 작업 (예: 12권으로 분책한 것)  <b>성서주해보감</b>_112Page                      대법원 92도2963 판결</p>
<p><b>전통문양 '민속도감, 도록'</b>_111Page                      대법원 79도1482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 고소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p>	<p>행위자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배열  <b>'CD트랙 구분 효과음' 사건</b>_113Page                      대전지법 2011가합14194 판결</p>
	<p>서식에 불과하여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b>프랭클린 플래너</b>_113Page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812</p>

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재를 모아놓는 '수고'를 했다고 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 하는데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즉 편집저작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연표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 연표라면 등록 가능한 것이다.

### ▶ 미술사 연표 '20세기 미술의 모험'

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번역·출판한 "20세기 미술의 모험" 1, 2권에 실려 있는 연표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축적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한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

자료를 모아 놓은 도감이나 정보지의 경우에도,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 ▶ 입찰경매정보지 '한국입찰경매정보'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법원계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중간 생략]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전통문양 ‘민속도감, 도록’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저작권법에 이른 바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문제된 고소인 김만희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 고소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판단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간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선택·배열이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가나다순으로 정리된 전화번호부, 사전 등은 편집저작물이 아니다.

▶ ABC, 가나다순 전화번호부 499 U.S. 340 18 U.S.P.Q. 2d 1275 (1991)

피고의 화이트 페이지는 사실이 독창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거나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독창성(originality)을 결여했다.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표준화된 방식에 따르거나, 기능성, 실용성 등의 이유로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다.

▶ 법조수첩사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수첩을 이용하는 자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송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이기 는 하지만,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위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

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

1권의 책을 12권으로 분책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기계적 작업에 그치는 경우 편집저작물이 될 수 없다.

### ▶ 성서주해보감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구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성서주해보감의 편집을 함에 있어서 인용된 자료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위 한글개역성경에 이미 수록된 것이었고, 그 인용작업 또한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옮겨 놓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그다지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제성구 부분이 위 성서주해보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성서주해보감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수집과 출판 등에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배열은 등록이 불가하다.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창작성이 개입되어야 한다. 특별한 기준없이 성실하게 모아놓았다거나 기계적 작업에 불과한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 ‘CD트랙 구분 효과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4194 판결

기존의 효과음으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구입한 후 각 트랙의 첫 부분, 끝 부분에 배치, 녹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시디에 사용된 효과음은 각 트랙을 구분 짓기 위한 용도의 짧은 음향에 불과하여 소재의 수집·분류·선택에 있어서 일정한 방침·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다이어리 양식은 ‘공란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서식’에 불과하여, 편집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프랭클린 플래너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812 결정

다이어리 양식의 경우 사람이 편리하게 공란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편집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12)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제작, 또는 방송을 통하여 해석하고 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이 가능하다.
  -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또는 예능적 방법으로

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예컨대, 연기자·가수·연주자·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 음반을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자:2014나25889 판결) - 예컨대, SM엔터테인먼트 · YG엔터테인먼트 등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예컨대, KBS · MBC · SBS 등

### ▶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권접권을 가질 뿐(이다).

### ▶ 장사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25889 판결

저작권접권자로서 음반제작자는 물리적인 녹음행위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원반(마스터테이프) 제작 당시에 악곡의 녹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타당하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와 목록지 \_ 등록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저작권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권 접권 등록	① 제목 [제 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 [ ] 여러 건 등록 : 총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건))		
	② 종류	[V] 실연 ([V] 가창 [ ] 연주 [ ] 연기 [ ] 음성연기 [ ] 무용 [ ] 지휘 [ ] 기타( )) * 뒤쪽의 실연·음반방송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 음반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방송 ([ ] 라디오 방송물 [ ] TV 방송물 [ ] 기타( ))		
신청인 △ 등록 권리자 ▽	③ 성명 [법인명]	(한글) 홍길동 (한자)		
	④ 국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하위) 5층		
	⑦ 전화 번호	가팩(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⑧ 전자우편주소 hong@copyright.or.kr
	⑨ 신청인 구분	[V]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본인 [ ] 공동실연자·공동음반제작자·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명 [법인명]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소		⑪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신청인의 대리인 홍인형

(홍인형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제9호서식의 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제10호서식의 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방문·우편 :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0,000원
	4. 실연자·음반제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인 터 넷 : 20,000원
5. 저작권접권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음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저작인접물 목록지

###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제 호 (제 목)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종 류	형태 및 수량 (고정물)	비고
1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저작인접물	방송	CD 1	
2	홍길동의 아리랑	저작인접물	음반	CD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명세서 \_ 실연

저작권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실 연	① <b>제호(제목)</b>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② <b>종 류</b>	<input type="checkbox"/> 가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주 <input type="checkbox"/> 연기 <input type="checkbox"/> 음성연기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지휘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③ <b>실연의 구성원</b>	2명	④ <b>장 소</b>	서울 종로구 소재 세 중문화회관	⑤ <b>실연의 크기</b>	5분 25초
	⑥ <b>복제물 형태</b>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⑦ <b>복제물 수량</b>	1 # 제출하는 복제물의 수량을 기재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⑧ <b>내 용</b>	서자된 처지의 슬픔을 표현한 곡을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협주. 피아노는 전반부 피아니시모의 표현이 포인트로 조용하면서도 섬세한 느낌을 살려 연주하였고, 바이올린은 고음의 비브라토로 호소력이 극대화되게끔 연주한 것이 특징이다.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⑨ <b>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b>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 사항	⑩ <b>권리에 대한 지분</b>	홍길동 50%, 길동모 50%				
	⑪ <b>실 연</b>	실연연월일	2020.03.01			
	⑫ <b>고정된 경우</b>	고정 매체	<input type="checkbox"/> 음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상			
		레이블의 명칭	홍길동전 전곡완주 공연			
		맨 처음 고정된 날	2020.03.01	맨 처음 고정된 국가	대한민국	
	⑬ <b>출신된 경우</b> *출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 제외	제작자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활빈당	국 적	대한민국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실연이 출신된 날		
방송사업자 성명(법인명)			국 적			
	방송설비의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⑭ <b>실연시 사용한 이름</b>	홍길동, 길동모 # 예명, 이명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⑮ <b>공동실연</b>	(독창자·독주자) 성 명		(독창자·독주자) 국 적			
⑯ <b>피상속인정보</b> # 본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음반

##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음 반	① 제 호 (제 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 칭	홍길동전 전곡 완주 앨범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				
	③ 종 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중음반 <input type="checkbox"/> 클래식음반 <input type="checkbox"/> 국악음반 <input type="checkbox"/> 동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크 기	5분 25초 # 음의 재생시간		
	⑤ 복 제 물 형 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⑥ 복 제 물 수 량	1		
	* 기존 등록 물인 경우 기재 하지 않음	⑦ 내 용	<p>서자의 슬픔을 표현한 곡,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협주, 피아니시모에서 비브라토까지 다양한 표현과 넓은 음악대를 담으면서도 디지털 보정을 절제하여 담백하게 녹음하였다.</p> <p># 등록하고자 하는 음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p>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 사항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음반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⑩ 음을 맨 처음 고정할날	2020.03.01	⑪ 음이 맨 처음 고 정된 국가	대한민국	⑫ 음반을 발행한 날	2020.05.01
	⑬ 피상속인 정보 # 본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방송**

저작권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① 제 호 (제 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라디오 방송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TV 방송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③ 크 기 45분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
	④ 형 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⑤ 수 량 1 #제출하는 복제물의 수량을 기재
	⑥ 내 용	심야 토크쇼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첫회 방송분. 홍길동의 진행 하에 게스트로 홍판서가 출연하여 '적서차별'에 관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스튜디오 촬영물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록사항	⑧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방송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	
	⑨ 방송을 한 연월일	2020.03.01	
	⑩ 방송을 한 장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여의도 000 방송국	
	⑪ 방송 설비의 소재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1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 [TIP] '편집저작물'로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의 등록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등록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또는 갱신 등록을 별도로 겸해 두는 것이 좋다.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데이터베이스	① 제1회제출	stock prices DB(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3건 (IV 여러 건 등록 : 총 4 건) # 동시에 여러 건 등록신청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단, 등록신청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신청인 △ 등록권리자 ▽	② 성명 (법인명)	(한글) 홍길동 (영문)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③ 국적	대한민국	④ 주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000000-0000000 123-45-67890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55-792-0000 010-1234-5678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⑧ 신청인 구분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 공동제작자 중 1인(등록대상)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등록대상)	hong@copyright.or.kr
	대리인	⑨ 성명 (법인명)	홍인형
	⑪ 주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000000-0000000
	⑫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1234-5678(010-1234-5678)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⑬ 전자우편주소
			hongdani@copyright.or.kr

\* 등록을 거기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신청인 2020년 8월 5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신청료 10건까지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작등본 등)	방문·우편: 30,000원	신청료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인 터 넷: 20,000원		
5.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등록면세료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명세서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stock prices DB(주가 데이터베이스)			
	② 복제물 형 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디스켓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③ 복제물 수 량	1	
	④ 내 용	한국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될 이후의 모든 추가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시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작 <input type="checkbox"/> 갱신	⑦ 연월일	2020.01.01.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		
	공표	⑧ 공표연월일	2020.03.01.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	⑨ 공표국가	대한민국
		⑩ 공표방법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⑪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www.copyright.or.kr
	⑫ 공표 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홍길동	
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나

### 권리변동등록

#### 권리변동 등록의 종류

- ① 저작재산권, ② 저작인접권, ③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과
- ④ 배타적발행권·⑤ 출판권 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 일반저작물 저작권산권 양도 등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양쪽) 4일	
① 계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Hong's Secret(홍스 시크) 외 1건 (( ) 여러 건 등록 : 총 1건)			
② 종 류	*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여러 건 등록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자)		
	④ 국 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추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차점		
	⑦ 전 화	자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010-000-0000	hbsd@kccp.com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주식회사 헬빈당 외 1인 (한자)		
	⑩ 국 적	대한민국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타입에는 기재하지 않음
⑫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지빌)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양품점			
⑬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010-000-0000	hbd@kccp.com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저작권	⑯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⑰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추암로 107(동지빌)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양품점	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의 대리인 저작권 (저작권의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한국저작권위원회 규정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 신청물 10건 40,000원 초과 시 추가건당 : 인 네 트 : 15,000원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m) 또는 중질지(80g/m))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재산권 <input type="checkbox"/> 배타적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출판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 작 물	① 제 호 (제 국)	Hong's Secret (홍스 시크릿)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음악저작물>대중가요>작곡		
	③ 복제물 형 태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마이크로타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 인 경우 작성 없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제어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⑥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C-2014-00000(2014.09.05)		
등 록 사 항	⑦ 대상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재산권 전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input type="checkbox"/> 저작재산권 일부 ( ) <input type="checkbox"/> 배타적발행권 (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전송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type="checkbox"/> 복제·전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행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년 ( 2010.09.30 )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 등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 재산권  <input type="checkbox"/> 배타적 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출판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도	⑨ 계약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계약 <input type="checkbox"/>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⑩ 기 간  ⑪ 국 가  ⑫ 언 어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처분 제한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⑭ 당사자 약행내용
<input type="checkbox"/> 질권 설정 등	⑮ 피압보채권액	⑯ 변제기	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제철용품))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신청서

##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프로그램 [V] 저작권 [ ] 설정  
 [ ] 배타적발행권 [ ] 알도 [ ] 본래권  
 [ ] 출판권 [ ] 저작권 설정 등

\* [ ]에는 V표 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4일

접수번호	프로그램	저작권자	접수일자	처리기간
프로그램 제작물	① 제목 (명칭)	정통소프트웨어		
	② 등록 번호	C-2015-000000		
등록 권리자	③ 성명 (법인명)	(한글)정통소프트웨어 주식회사	④ 국적	대한민국
		(한자) (영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
	⑦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하위) 5층	⑥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간지(우편주소)) (출판(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자	⑧ 성명 (법인명)	(한글) 한국저작권위원회	⑨ 국적	대한민국
		(한자) (영문)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⑩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지문, 게이트웨이) 5층	⑪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간지(우편주소)) abc@copyright.or.kr (출판(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0)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 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인	⑬ 성 명(법인명)		⑭ 주민(법인)등록번호	
	⑮ 주 소			
	⑯ 전 화 번 호(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 니다.	(간지(우편주소))	

등록 사항	⑰ 등록연도 그 연월일	2015년 1월 1일 ( [ ] 설정 [V] 알도( [ ] 알만계한 [ ] 도급계약계약 [ ] 소멸 [ ] 기타 ) ) 년 월 일 ( [ ] 도급계약계약의 경우 실제 권리당일)	
	V) 프로그램 저작권권	[V] 알도 [ ] 일부 ( )	
		[ ] 처분 제한	[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압류 [ ] 가압류 [ ] 가처분 [ ] 당사자우선내용
		[ ] 절권	[ ] 설정 [ ] 변경 [ ] 소멸
	[ ] 프로그램 저작권권 타자발행권	[ ] 설정	설정기간 프로그램 저작권권자의 동의 여부 ( )
		[ ] 처분 제한	[ ]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 ] 압류 [ ] 가압류 [ ] 가처분 [ ] 당사자우선내용
		[ ] 절권	[ ] 설정 [ ] 변경 [ ] 소멸
	[ ] 기타		

\* 등록을 거기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신청인 정통소프트웨어 주식회사(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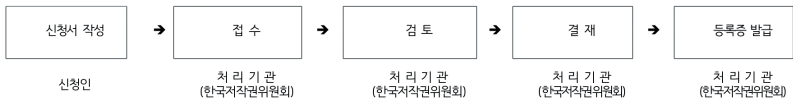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권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li> <li>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li> <li>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발원 결정문 등)</li> <li>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li> <li>5. 저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li> <li>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li> <li>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li> <li>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li> <li>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li> </ol>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인 터 넷: 6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24,000원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프로그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명세서

## 미등록 프로그램의 저작권 이전 등록 등 신청 시

[별지 제4호의2서식]

###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4211910

1. 제호	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2. 주요 내용	적용 분야	사무관리 > 기타사무관리S/W
	특징	시각장애인들이 윈도우환경에서 프로그램 운용 중에 필요한 각종안내와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요 기능	테스트메일발송, 편지작성·수정기능, 전자메일 발송기능, 발송메일 로그인생성
	사용 방법	컴퓨터에 연결된 마우스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작동 제어
	판매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업용 <input type="checkbox"/> 비상업용
3. 사용 기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IBM-PC호환기종 <input type="checkbox"/> 매킨토시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input type="checkbox"/> PDA <input type="checkbox"/> 기타( )	
4. 사용 OS	WINDOWS95/98/NT	
5. 사용 언어	VISUAL BASIC, C++	
6. 필요한 프로그램	해당없음	
7. 규모(byte 등)	2,000,000 byte	
8.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만 해당함)	성명(생년월일) *내국인 예시 : 김직원(891202) *외국인 예시 : Nanum(960204)  ※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없습니다.	
9. 복제물의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스 파일 <input type="checkbox"/> 오브젝트 파일 <input type="checkbox"/> 실행 파일 (수량 : CD1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저작인접권 양도 등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V] 저작인접권**  
[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V]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압축)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자 작 인 접 권	<b>① 제목</b> (제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 [ ] 여러 건 등록 : 총 [ ] 건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b>② 종류</b> ( ) 실연 ( [V] 가창 [ ] 연주 [ ] 연기 [ ] 음양연기 [ ] 무용 [ ] 재현 [ ] 기타 ( ) ) ( ) 음반 (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 [ ] 방송 [ ] 라디오 방송 [ ] TV 방송용 [ ] 기타 ( ) )				
신 청 인	<b>동 작 권 리 자</b>	<b>③ 성명</b> (법인명) (영문)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자)		
		<b>④ 국적</b> 대한민국	<b>⑤ 권리등록번호</b>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b>⑥ 주소</b>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케이트웨이다위) 5층		
		<b>⑦ 전화 번호</b> 자택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번호:	<b>⑧ 전자우편주소</b>	
	<b>동 작 의 무 자</b>	<b>③ 성명</b> (법인명) (영문) 홍길동 (한자) 현재		
		<b>④ 국적</b> 대한민국	<b>⑤ 권리등록번호</b>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b>⑥ 주소</b>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LH공사 신사옥 1층		
		<b>⑦ 전화 번호</b> 자택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b>⑧ 전자우편주소</b>	
대 리 인	<b>⑤ 성명</b> (법인명)	저작권	<b>⑥ 권리등록번호</b>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b>⑦ 주소</b>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LH공사 신사옥 1층	<b>⑧ 전화번호</b>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등록권리자 및 동록의무자의 대리인 저작권 (저작권의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조

첨 부 서 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5호서식의 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6호서식의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신청물 10건까지
	3. 동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방문·우편 : 40,000원
	4. 등록권리자·동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5,000원
5. 저작인접물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인 터 넷 :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음
6. 동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 48,240원
7. 등록권리자·동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저작인접권 : 24,000원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록의무자의 승낙서		배타적발행권 : 24,000원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질지(80g/m<sup>2</sup>)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명세서 \_ 실연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권접권(실연) <input type="checkbox"/> 저작권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실 연	① 제 호제 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② 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주 <input type="checkbox"/> 연기 <input type="checkbox"/> 음성연기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지휘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 실연의 구성원	2 명	④ 장소	서울 종로구 소 재 세종문화회관		
	⑥ 부제물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타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⑦ 부제물 수량	1		
* 기존 등록물인 경우 적용 안	⑧ 내용	서자된 처지의 슬픔을 표현한 곡을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협주, 피아노는 전반부 피아니시모의 표현이 포인트로 조용하면서도 섬세한 느낌을 살려 연주하였고, 바이올린은 고음의 비브라토로 호소력이 극대화되게끔 연주한 것이 특징이다.				
⑨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이 목 록 사 항	⑩ 대상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권인권 전부 <input type="checkbox"/> 저작권인권 일부 ( <input type="checkbox"/> 복제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배포 <input type="checkbox"/> 방송 <input type="checkbox"/> 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송 <input type="checkbox"/> 지분 % ) <input type="checkbox"/> 저작권인권의 배타적발행권 (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전송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type="checkbox"/> 복제·전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략 2020.01.30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 등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저작 인권의 발 행권 <input type="checkbox"/> 저작 인권의 발 행권 배타적 권리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type="checkbox"/> 양도	⑫ 계약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계약 <input type="checkbox"/> 도급용의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 약 ※ 당사자가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⑬ 기간		
				⑭ 국가		
<input type="checkbox"/> 처분 제한	<input type="checkbox"/> 차분 제한	⑮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input type="checkbox"/> 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처분 ( )			
		⑯ 당사자 요청비용				
<input type="checkbox"/> 청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청권 설정 등	⑰ 피담보채권액	⑱ 변제기			
		⑳ 질권인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 ⑧ 기재 대신 ⑨만 기재

음반

[별지 제 15호서식]

(양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인접권(음반) <input type="checkbox"/>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음 반	① 제 호제 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 외곽에는 한글 표기
	② 라이벌의 명칭	홍길동건 전곡 완주 앨범			
	③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중음반 <input type="checkbox"/> 클래식음반 <input type="checkbox"/> 국악음반 <input type="checkbox"/> 동화 <input type="checkbox"/> 가타	④ 크기	5분 25초	
	⑤ 복제물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가타	⑥ 복제물 수량	1	
	* 기존 등록권이 있지 않음	⑦ 내용	서자의 슬픔을 표현한 곡,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협주. 피아니시모에서 비브라토까지 다양한 표현과 넓은 음역대를 담으면서도 디지털 보정을 절제하여 담백하게 녹음하였다.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원본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⑨ 대상 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인접권 전부 <input type="checkbox"/> 저작인접권 일부 ( <input type="checkbox"/> 부제 <input type="checkbox"/> 배포 <input type="checkbox"/> 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송 <input type="checkbox"/> 지분 % ) <input type="checkbox"/> 배타적발행권 ( <input type="checkbox"/> 부제·배포·전송 <input type="checkbox"/> 부제·배포 <input type="checkbox"/> 부제·전송 <input type="checkbox"/> 가타 )			
	⑩ 등록 내용 (발행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략 (2020.01.30 )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 등 ( ) <input type="checkbox"/> 가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 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도	⑪ 계약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계약 <input type="checkbox"/>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input type="checkbox"/> 특약 * 당사자가 한약된 경우에만 기재	⑫ 기간	
	<input type="checkbox"/> 저작 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처분 제한	⑬ 변역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input type="checkbox"/> 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처분 ( )	
⑭ 당사자 의정내용					
⑮ 피담보채권액				⑯ 변제기	
<input type="checkbox"/> 장권 등 설정		⑰ 질권면·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 용지) 60g/m(재활용품)

■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⑦ 기재 대신 ⑧만 기재

## 방송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물	① 제 호 (제 목)	달이 빛나는 밤에 - 홍길동편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라디오방송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TV 방송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③ 크 기	45분	
	④ 복제물 형 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VD <input type="checkbox"/> Tape <input type="checkbox"/> 비디오테이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⑤ 복제물 수 량	1	
	* 기존 등록물 인 경우 기재하 지 않음	⑥ 내 용 심야 토크쇼 '달이 빛나는 밤에' 26회 방송분. 공취의 진행하에 게스트로 홍길동이 출연하여 대담을 나 누는 스튜디오 촬영물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⑧ 대 신 권 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인접권 전부 <input type="checkbox"/> 저작인접권 일부( <input type="checkbox"/> 복제권 <input type="checkbox"/> 동시중계방송권 <input type="checkbox"/> 지분 % )			
	⑨ 등 록 내 용 (발생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약( 2020.01.30 )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 등(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도	⑩ 계 약 종 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계약 <input type="checkbox"/>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⑪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⑩ 기 간		
			⑩ 국 가		
	<input type="checkbox"/> 처분 제한	⑫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input type="checkbox"/> 압 류 <input type="checkbox"/> 가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처분 ( )		
⑫ 당사자 약정내용					
<input type="checkbox"/> 질권 설정 등	⑬ 피담보채권액			⑬ 변제기	
	⑬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 반드시 기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⑥ 기재 대신 ⑦만 기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양도 등 신청서·명세서 작성예

##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V]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VI]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지 목)	stock prices DB(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3건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VI) 여러 건 등록 : 총 4건						
신청인 내배판권리자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자)						
	③ 국 적	대한민국						
	④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타워) 5층						
	④ 전 화 번 호	<table border="1"> <tr> <td>지역사무실</td> <td>휴대전화번호</td> <td>⑦ 전자우편주소</td> </tr> <tr> <td>00-0000-0000</td> <td></td> <td></td> </tr> </table>	지역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00-0000-0000		
	지역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00-0000-0000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홍길동 (한자)							
⑨ 국 적	대한민국							
신청인 내배판권리자	⑩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로 97						
	④ 전 화 번 호	<table border="1"> <tr> <td>지역사무실</td> <td>휴대전화번호</td> <td>⑩ 전자우편주소</td> </tr> <tr> <td></td> <td>010-0000-0000</td> <td></td> </tr> </table>	지역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⑩ 전자우편주소		010-0000-0000	
	지역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⑩ 전자우편주소					
	010-0000-0000							
⑪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08							
대리인	⑫ 성 명 (법인명)	김작권						
	⑬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08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03월 23일  
등록권리자 및 의무자의 대리인 김작권 (서명 또는 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 신청물 10건 40,000원 초과 시 추가건당 : 15,000원 인 터 넷 :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음(연간 10건에 한합니다.)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48,240원 배타적발행권 : 24,000원
	2.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input type="checkbox"/>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input type="checkbox"/>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① 제호(제목)	stock prices DB(주가 데이터베이스)		
	② 복제물 현황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인쇄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CD <input type="checkbox"/> DMD <input type="checkbox"/> 다스렛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③ 복제물 수량 1	
기 존 등 록 물 경 우 기 재 하 지 않 음	④ 내 용	한국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된 이후의 모든 추가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 록 사 항	⑥ 대상권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작자 권리 전부 <input type="checkbox"/> 저작자 권리 일부 <input type="checkbox"/> 복제권 <input type="checkbox"/> 배포권 <input type="checkbox"/> 방송권 <input type="checkbox"/> 전송권 <input type="checkbox"/> 지분 % <input type="checkbox"/>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전송 <input type="checkbox"/> 복제·배포 <input type="checkbox"/> 복제·전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⑦ 등록내용 (발생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약(2020.10.01)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 등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input type="checkbox"/>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설정 <input type="checkbox"/> 처분 <input type="checkbox"/> 제한 <input type="checkbox"/> 질권 <input type="checkbox"/> 설정	⑧ 계약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계약 <input type="checkbox"/>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input type="checkbox"/> 특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⑨ 기 간 ⑩ 국 가 ⑪ 기 타
⑨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input type="checkbox"/> 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압류 <input type="checkbox"/> 가처분 ( )	
<input type="checkbox"/> 질 등	⑩ 피담보채권액	⑫ 변제기		
	⑪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④ 기재 대신 ⑥만 기재



# 저작권 등록, 내 권리 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 ○ 어떤 점이 좋은가요?

- ☑ 직접 입증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됩니다.
-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침해물품 통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창작하면 곧바로 저작권 등록 신청!

온라인등록시스템 [www.cros.or.kr](http://www.cros.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저작권 문제, 당신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상담 1800-5455**

1번 저작권 법률상담    2번 문화예술인 전문상담

3번 저작권 등록상담    4번 저작권 계약상담    0번 기타문의



**유형별 자동상담**



**게시판상담**



**서신 상담**



**내방 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http://www.copyright.or.kr))  
사업 > 저작권상담센터

진주본부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종합민원센터

서울사무소  
(우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종합민원센터

# 저작권 분쟁

신속하게 해결!



## • 조정제도란? •

저작권 분쟁 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 조정제도의 장점 •



전문성



경제성



신속성



비밀유지

## • 직권조정제도 •

조정부의 직권결정  
및 결정서 송부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



분쟁해결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02) 2669-0042, 0044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관계자료 2021-04

- 펴낸날\_ 2021년 11월
- 기 획\_ 강보라(한국저작권위원회)
- 집 필\_ 최진원 교수(대구대학교)
- 감 수\_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 펴낸곳\_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한국토지주택공사 1, 5층)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게이트웨이하워 5, 16층)
- 디자인\_ 마크 055-263-4001(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11)
- ISBN 978-89-6120-489-7  
ISBN 978-89-6120-038-7 (세트)